

過少資本規制制度의 改編方向

序 言

세계 대부분 국가의 稅法은 利子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데 반해, 配當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할 때 일반적으로 자본금을 적게 하고 借入金을 많게 하여 진출국에서의 課稅所得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날 선진각국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도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소위 過少資本規制制度를 두고 있다. 결국, 과소자본규제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자회사에 자본금보다는 차입금을 증가시켜 租稅回避를 도모하는 것에 대비한 세제이며, 요약할 수 있다.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과소자본규제제도를 운영중이며,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가 최근 급증하고 있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과소자본규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는 아직까지는 과소자본규제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1995년에 제정된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律에 過少資本規制制度가 포함되었고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외환거래 및 외국인의 國內投資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계획이어서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현재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므로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199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過少資本規制制度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차입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외국자본을 자기자본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할 수 있어서 외국자본도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앞으로 시행될 우리나라의 過少資本規制制度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金裕燦 專門研究委員의 집필로 완성되었다.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저자는 法制度的인 측면과 國際租稅 이론상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준 成均館大學校 朴宰完 教授, 漢陽大學校의 朱晚洙 教授 그리고 財政經濟院 國際租稅課 李京根 서기관, 그리고 本院의 安鍾錫 博士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자료정리 및 원고정리에 힘써 준 본 연구원의 康嫻婷 研究員, 張貞順 研究助員과 出版課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의 個人的인 見解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8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崔 洸

目 次

I. 序 論	11
II. 財務構造의 理論과 政府의 役割	13
1. 財務構造의 理論	13
2. 政府의 役割	20
가. 企業財務構造의 改善	20
나. 資本過少化를 통한 租稅回避行爲에 대한 規制	23
III. 우리나라의 現行 過少資本規制制度	36
1.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上의 過少資本規制制度	36
가. 過少資本 基準比率	36
나. 借入金의 範圍	38
다. 出資資本의 範圍	38
라. 損金不算入額의 算定方法	39
마. 國外支配株主의 範圍	39
바. 其他	41
2. 國內資本에 대한 過少資本規制 現況 및 政策方向	42
가. 現行 借入金에 대한 損金不算入制度	42
나. 借入金에 대한 損金不算入制度의 改正方向	43
다. 系列企業間 支給保證制限 規定	43
라. 海外投資資金에 대한 最小 自己資本調達比率制度	44
마. 海外投資資金에 대한 支給保證 制限制度	45

IV. 外國의 過少資本規制制度 運營現況	47
1. 美國	47
2. 英國	50
3. 獨逸	52
4. 日本	56
5. 프랑스	59
6. 캐나다	60
7. 호주	63
8. 스위스	65
9. 홍콩	67
10. 外國의 過少資本規制制度 運營現況 比較	69
V. OECD모델條約上的 過少資本規制制度 關聯規定	71
VI. 國內企業 및 外國人投資企業의 借入金 運用現況	75
1. 國內企業의 借入金 運用現況	75
가. 國內企業의 負債比率	75
나. 國內企業의 關係會社間 負債比率	78
다. 關係企業間 保證債務 現況	82
2. 外國人投資企業의 負債/資本比率	83
VII. 우리나라의 現行 過少資本規制制度의 評價 및 改善方案	86
1. 長期的인 政策方向에 대한 評價 및 改善方案	86
2. 中·短期的인 政策方向에 대한 評價 및 改善方案	88
가. 外國資本 流入에 미치는 影響	88
나. 國內企業活動에 미치는 影響	89
다. 外國企業과 國內企業에 대한 衡平性 問題	92

라. 外國의 過少資本規制制度運營에 대한 對應策	93
마. 過少資本 基準比率의 適正性	93
3. 細部的인 制度上的 問題點	94
가. 借入金의 範圍	94
나. 基準 出資資本金의 範圍	97
다. 國外支配株主의 範圍	97
라. 次期移越 條項	98
마. 獨立企業間 條件의 立證責任	98
VIII. 結論 및 要約	100
<參考文獻>	105
<附錄>	107

表 目 次

〈表 II - 1〉 租稅回避效果 分析(國外支配株主의 境遇)	31
〈表 II - 2〉 租稅回避效果 分析(國內支配株主의 境遇)	35
〈表 III - 1〉 最小 自己資金調達 比率 設定基準	45
〈表 IV - 1〉 外國의 過少資本規制制度 運營現況	70
〈表 VI - 1〉 國內製造業의 負債比率	75
〈表 VI - 2〉 國家別 製造業의 自己資本比率 및 負債比率의 比較 ...	76
〈表 VI - 3〉 業種別 負債比率	77
〈表 VI - 4〉 標本集團과 製造業 全體 및 全 產業分野의 財務構造 比較	79
〈表 VI - 5〉 國內企業의 關係·關聯會社間 負債比率(1994年)	80
〈表 VI - 6〉 關係·關聯會社 負債/資本比率別 構成	80
〈表 VI - 7〉 關係·關聯會社 負債가 있는 企業의 負債/資本比率 平均	81
〈表 VI - 8〉 支配株主 出資持分 平均과 關係·關聯會社 負債 및 關係· 關聯會社 出資持分 比率(1994年)	82
〈表 VI - 9〉 30大 大規模企業集團 債務保證現況	83
〈表 VI - 10〉 우리나라 外國人投資企業의 負債/資本比率	84
〈表 VII - 1〉 國內企業과 外國人 投資企業의 推定 負債比率	91

圖 目 次

[圖 II-1] 傳統的 視角으로 보는 負債比率 · 資本費用 · 企業價值 ...	14
[圖 II-2] MM模型에서의 資本費用과 企業價值	15
[圖 II-3] 破産費用 및 代理人費用을 考慮한 企業의 資本費用	18
[圖 II-4] 破産費用 · 代理人費用 및 企業價值	19
[圖 II-5] 代理人費用 考慮時 最適 財務構造	21
[圖 II-6] 破産費用 考慮時 最適 財務構造	22
[圖 VII-1] 借入金을 假裝한 出資關係(1)	95
[圖 VII-2] 借入金을 假裝한 出資關係(2)	96

I. 序 論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할 때 실제적으로는 資本出資에 해당하나, 이를 借入金의 형태로 제공하려는 유인동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차입금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투자위험 회피의 요인과 법인 단계의 과세를 줄이려는 요인을 들 수 있다. 통상 각국의 세법에서는 이자의 원천징수는 있지만 법인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어 損金算入되는 데 반해,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은 이익처분으로 되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서도 源泉稅가 과세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에 의한 자금조달은 법인단계에서의 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資本費用側面에서 유리하다. 이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실제적으로 자본출자를 借入金의 형태로 공여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법인의 지나친 차입금 의존에 대응하여 過少資本規制制度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과소자본규제제도 도입 국가들은 특히 외국계 기업에 대하여 이 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WTO 출범 및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함께 外換規制 및 외국인의 國內投資는 단계적으로 더 자유화될 것이며 외국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규제는 거의 사라질 것이므로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과소자본규제제도 도입과 외국계기업에 대한 차별적 적용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의 통과로 과소자본규제제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고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過少資本規制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借入金 中心으로 운영되는 외국자본이 自己資本化되어서 외국자본 도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

점에서 우리나라의 과소자본규제제도의 관련 규정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지는 제Ⅱ장은 두 개의 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절에서는 財務構造의 기본이론에 대하여 정리함으로써 제2절에서 기업의 재무구조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기업의 재무구조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기업의 財務構造 改善 그 자체와 資本過少化를 통한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루었다. 제1절의 재무구조의 이론과 제2절 ‘가.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에서는 내국법인과 외국투자법인에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인 내용이므로 그 경우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제2절 ‘나. 資本過少化를 통한 租稅回避行爲에 대한 規制’는 조세회피 효과를 추정해 봄으로써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과세제도상 다르게 취급되고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투자법인의 경우를 나누어서 다루었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過少資本規制制度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투자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소자본규제제도와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의 借入金規制條項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이어지는 제Ⅳ장과 제Ⅴ장에서는 외국의 과소자본규제제도와 OECD모델조약상의 過少資本規制制度 관련 규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Ⅵ장에서는 내국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의 차입금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그를 기초로 제Ⅶ장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過少資本規制制度가 어떤 경제적 영향을 야기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Ⅷ장에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II. 財務構造의 理論과 政府의 役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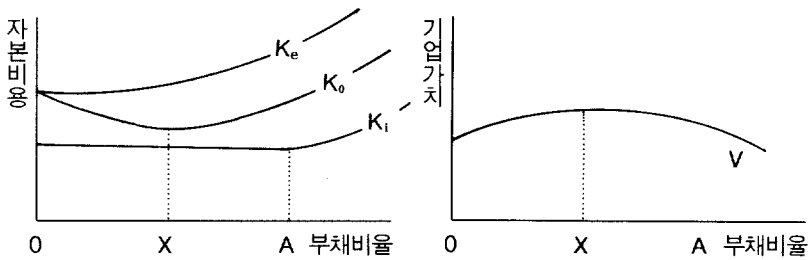
1. 財務構造의 理論

전통적인 재무구조이론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가치와 가중평균자본비용은 기업의 負債比率이 변함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특정수준의 부채비율에서는 그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 K_0 가 최저가 되는 最適財務構造를 이루게 된다는 견해를 가진다. 즉, 전통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무위험도 증가되어 자기자본비용 K_e 와 타인자본비용 K_i 가 상승되는데, 이 때 K_0 는 어떤 특정수준의 부채비율까지는 감소하여 그 수준에서 최저가 되며, 負債比率이 그 수준보다 증대되면 K_0 는 다시 증가된다. 이 같은 현상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圖 II-1]과 같다.

[圖 II-1]에서 K_i 는 부채비율이 OA 가 될 때까지는 일정하나, 이를 초과한 부채의 증가는 K_i 를 증가시킨다. 이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커짐에 따라 채권자가 위험의 증가를 느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함을 뜻한다. K_e 는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재무위험도 증대되어 체증하게 된다.

K_0 는 부채비율 OX 에서 최저가 되는데, 이 때의 부채비율에서 기업은 最適財務構造를 이룬다. 또한, 부채비율이 OX 를 초과하면 재무위험이 부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레버리지의 혜택을 능가하게 되어 K_0 는 증가하고 따라서 기업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통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기업은 OX 만큼의 負債比率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최적재무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자본조달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의 재무구조 이론에서는 자본비용의 증감에 미치는 稅制나 非稅制要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圖 II - 1] 傳統的 視角으로 보는 負債比率 · 資本費用 · 企業價值



K_e : 자기자본 비용
 K_i : 타인자본 비용
 K_o : 가중평균자본비용
 V : 기업가치의 시장가격

1958년에 발표되어 현대 企業財務理論의 초석이 된 Miller & Modigliani의 논문에 의하면 최적 재무구조(optimal capital structure)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¹⁾. 다시 말하면, 기업의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주식발행을 통한 자기자본(equity)의 사용과 부채(debt)발행을 통한 타인자본의 사용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수단도 기업의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무구조와 기업의 시장가치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무시한 1958년의 MM(Miller & Modigliani)이론은 현실적으로 부채를 이용하면 減稅效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Miller & Modigliani는 1963년에 발표한 수정논문에서 타인자본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감세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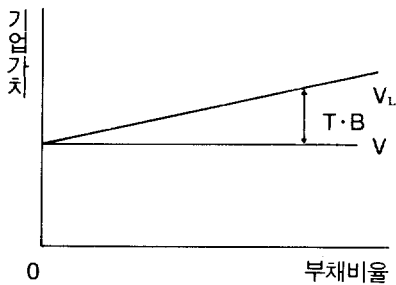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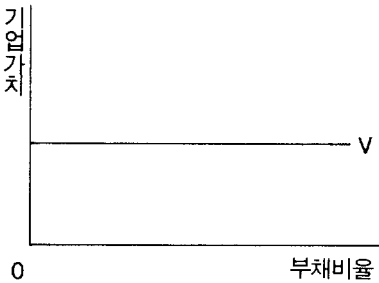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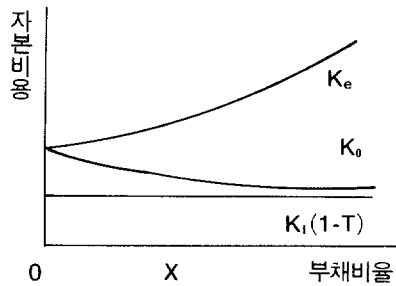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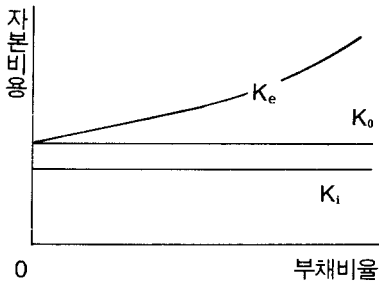
1) F. Modigliani and M. Miller,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8, No. 3, June 1958, pp. 261~297.

업의 레버리지가 증가하면 K_0 가 감소하므로 타인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기업의 가치는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²⁾. 즉, MM이론은 법인세를 고려하는 경우 타인자본을 많이 사용하면 위험이 증가하여 K_e 는 증가하

[圖 II -2] MM模型에서의 資本費用과 企業價値

(a) 법인세 없음

(b) 법인세 있음



B : 부채규모

T : 법인세율

V : 기업의 가치

V_L : 법인세를 통한 이자비용절감효과를 고려한 기업가치

2) F. Modigliani and M. Miller, "Corporate Income Tax and Cost of Capital: A Corre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LIII, No. 3, June 1963, pp. 433~442; Brigham and Gapenski, *Financial Management*, 6th ed., The Dryden Press, pp. 450~453.

나 타인자본사용에 따른 利點, 즉 타인자본비용이 자기자본비용보다 저렴한 것과 이자비용의 법인세효과 등이 K_e 의 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K_0 가 감소하여 기업의 가치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위의 [圖 II-2]에서 (a)의 경우는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서 타인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채비율에 상관없이 일정하고 자기자본비용은 부채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다. 이 경우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부채비율에 상관없이 일정하며³⁾ 따라서 기업가치도 부채비율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a)의 경우와 비교할 때 (b)의 경우 즉 법인세를 고려한 경우에는 타인자본비용이 (a)의 경우보다 낮은 수준이며 따라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부채비율이 커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낮아진다. 이는 기업가치가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질수록 계속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Miller & Modigliani는 그의 1963년 수정논문에서 법인세를 고려하였으나 개인소득세의 영향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밀러(M. Miller)는 1977년의 논문에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다 같이 고려하는 경우 레버리지가 企業價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밀러는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고려하는 경우 부채사용에 의하여 야기되는 減稅效果는 자기자본에 의하여 야기되는 非減稅效果와 相殺되므로 기업의 가치는 재무구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여 Miller & Modigliani의 1963년 수정논문을 다시 수정하였다⁴⁾. 결국 법인세를 고려하는 경우 법인세효과가 발생하여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지만 이에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고려하는 경우 법인세효과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相

3) 가중평균자본비용 $K_0 = (1 - \alpha)K_e + \alpha K_i$ (α 는 부채비율)이므로 K_e 가 α 와 비례하여 늘어나고 K_i 는 α 에 상관없이 일정할 때 K_i 가 K_e 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K_0 도 α 의 비중이 늘어나더라도 상관없이 일정할 수 있다.

4) M. H. Miller, "Debt and Taxes," *Journal of Finance*(May 1977), pp. 261~275; Brigham and Gapenski, *Financial Management*, 6th ed., The Dryden Press, pp. 454~456.

殺效果가 발생하여 기업의 가치는 재무구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1958년의 Miller & Modigliani의 주장은 完全資本市場, 無破産費用 및 無租稅의 3가지 중요한 假定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 假定을 보다 현실적인 假定으로 대체하면서 재무구조의 이론이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Miller & Modigliani의 완전한 자본시장에 대한 假定을 현실에 맞게 변형하여 대리인(agency) 이론 및 불균형정보(asymmetric information) 이론으로 발전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세금과 파산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假定을 없애고 세금과 파산비용이 재무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대리인 이론⁵⁾은 주주(stockholders), 채권자(bondholders) 및 경영자(managers) 사이에 상충된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즉 대리인비용(agency costs)을 이용하여 최적재무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대리인비용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이나 효용의 증가를 위하여 행동함으로써 주인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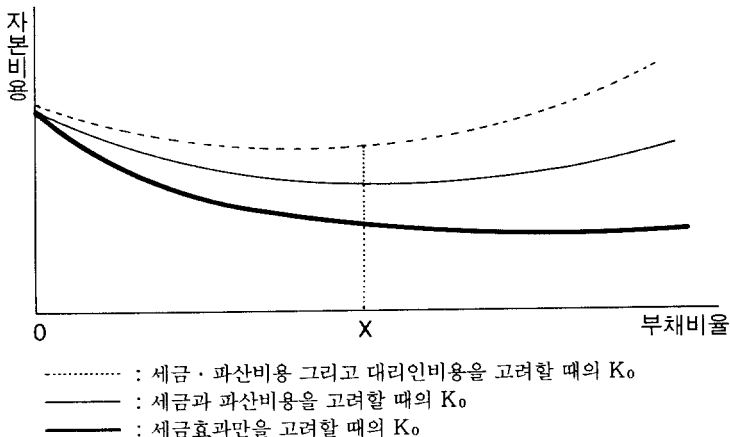
株主와 債權者 사이를 예를 드는 경우 기업의 투자가 성공할 경우 投資收益 중에서 채권자의 몫은 일정한 반면 그 나머지는 모두 주주의 몫이 된다. 반대로 기업의 투자가 실패할 경우 주주의 유한책임 때문에 대부분의 부담이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주는 위험부담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할 동기를 갖게 된다. 투자의 재원을 부채로 조달할 경우 주주의 이러한 행동을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거나 기업의 負債依存度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들(은행 또는 사채권 소지자)은 그들의 권

5) Jensen and Meckling, "Theory of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October 1976).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기업의 업무 전반을 監理할 목적으로 대리인 또는 대리인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채권자들을 위한 대리인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代理人費用(agency cost)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상기의 대리인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들은 이같은 비용을 이자율의 상승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기업에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대리인비용은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주주가 부담하는 격이 되므로, 상기한 대리인비용의 발생은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어 기업의 K_0 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파산비용이 없고 세금도 法人稅만 존재하는 경우에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재무구조는 全額 負債를 통한 자금조달의 형태이다. 그러나 파산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부채의 비중이 커질수록 파산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부채의 세부담 輕減效果에도 불구하고 전액 부채를 통한 資金 調達의 형태가 더이상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재무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조세와 파산비용을 고려하였을 경우의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최적 재무구조는 限界稅金 輕減效果와 限界破産費用이 일치하는 곳에서 가능해진다.

[圖 II-3] 破産費用 및 代理人費用을 考慮한 企業의 資本費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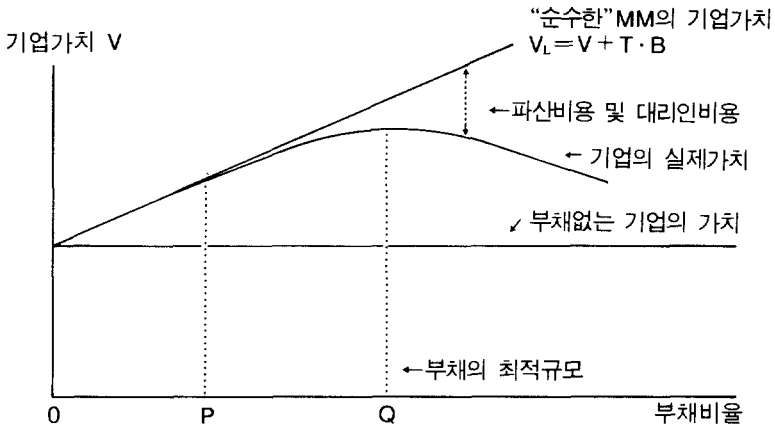
[圖 II-3]은 [圖 II-2]의 a)에서 稅金·破産費用 그리고 代理人費用의 발생가능성을 포함시킨 것인데, 이 경우의 최적재무구조는 X점의 레버리지 수준에서 결정된다.

MM이론이 무시한 두 가지 요인, 즉 ① 잠재적인 미래파산비용의 현재가격, ② 대리인비용의 현재가격 등을 고려하면 負債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V_L 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를 고려한 MM이론의 모형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V_L 이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V_L = V + T \cdot B - (\text{기대파산비용의 현재가격}) - (\text{대리인비용의 현재가격})$$

이와 같은 상충모형은 레버리지에 의한 법인세효과와 레버리지에 의한 파산비용과 대리인비용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에서 최적재무구조가 나타나며, 이때 利得과 費用이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다.

[圖 II-4] 破産費用·代理人費用 및 企業價值



위 식의 내용은 [圖 II-4]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보면 부채가 P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법인세 절약액의 효과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P점

이후부터는 파산비용과 대리인비용이 점차 커져 세금혜택의 일부를 상쇄하게 된다. Q점에서 부채에 의한 세금혜택의 이득은 부채에 의한 단점에 의해 완전히 상쇄되며, 그 이후부터는 단점이 세금의 혜택보다 크게 된다.

2. 政府의 役割

기업의 재무구조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범주로 구별이 된다. 첫째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기업의 財務構造의 改善 그 자체인 경우로서 기업의 대리인비용이나 파산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여건⁶⁾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사회적 적정수준 이상으로 차입금에 의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재무구조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목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본에 해당하는 자금을 借入金의 형태로 공여함으로써 차입금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사례에 대하여 衡平課稅나 實質課稅原則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가. 企業財務構造의 改善

기업이 과다하게 債務에 의존하여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하여 稅制나 非稅制手段을 통하여 財務構造 改善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서 자본금의 3배 이상의 차입금에 대한 損金을 不認定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過少資本稅制를 들 수 있다. 다른 예로서 1995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투자에 대한 자금조달 건전성 제고 수단으로 최소자본 조달비율과 모기업의 支給保證限度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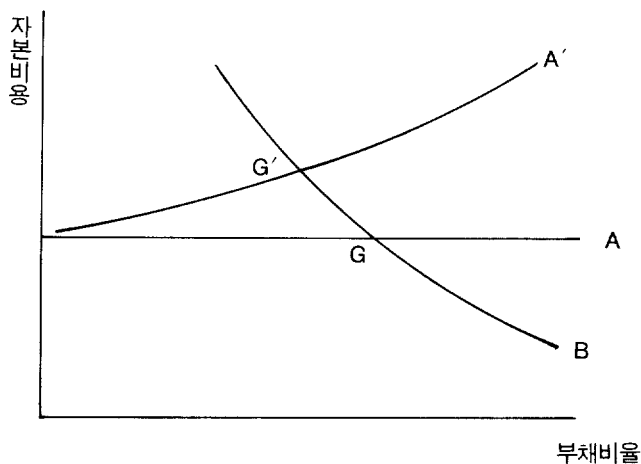
6) 이러한 여건은 은행의 파산을 정부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현실에 기인한다.

리나라의 해외투자가 적정한 규모의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 규모를 무리하게 키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⁷⁾.

그러면 이러한 정책수단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평가해 보기로 한다. Miller & Modigliani의 재무구조이론에 의거하는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과다차입금에 대한 損金不算入)은 그 존립기반이 없다. 기업의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사용이나 負債發行을 통한 타인자본 사용이나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최적 재무구조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무구조개선이라는 목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된다.

Miller & Modigliani의 이론을 발전시킨 代理人 理論에서는 이와 다른 결론의 도출이 가능하다.

[圖 II - 5] 代理人費用 考慮時 最適 財務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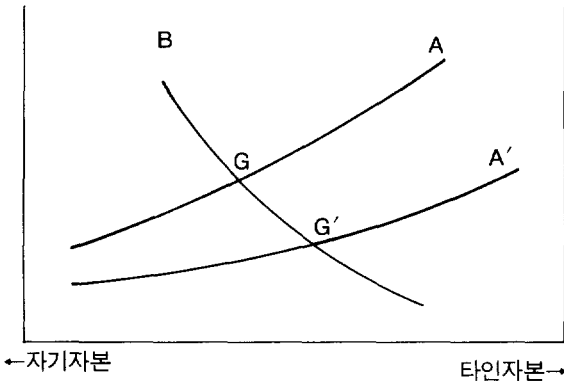
- A : 시장이자율
- A' : 대리인비용 고려시 시장이자율
- B : 부채사용을 통한 절세효과

7) 상세한 내용은 제Ⅲ장 참조.

[圖 II -5]에서 A곡선은 시장이자율이고 A' 곡선은 대리인비용을 고려할 때의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이자율을 나타낸다. 즉 당해기업은 부채율이 높아지면서 시장으로부터 비싼 이자율을 통하여서만 차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리인비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재무구조 균형점 G'는 대리인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때의 재무구조 균형점 G보다 적은 부채를 보유하는 상태가 된다. 만약 현실에서의 상태가 채권자가 개별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라서 대리인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여 차입관계에 대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 못하다면 현실의 재무구조 상황은 적절한 재무구조 상황인 G'보다 많은 借入金을 사용하는 過多借入 상태가 되기 쉽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이렇게 채권자가 개별기업의 부채비용에 따라 적절한 대리인비용을 감안하여 차입이자율을 결정하기 어려운 요인으로는 우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의 가격기능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은행의 대출심사기능(신용평가기능)이 미약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파산비용이론에 의하는 경우에도 Miller & Modigliani의 입장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

[圖 II -6] 破産費用 考慮時 最適 財務構造



- A : 파산비용곡선(파산가능성이 있는 경우)
- A' : 파산비용곡선(정부의 규제금융으로 인하여 파산가능성이 적은 경우)
- B : 부채사용을 통한 절세효과

위 [圖 II -6]에서 G' 점은 정부의 救濟金融으로 인하여 파산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기업의 재무구조 선택이며 파산비용을 고려하였을 경우의 기업의 재무구조선택 G보다 부채쪽으로 왜곡되어진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G' 점이 현실을 대변한다고 보여지며 사회적 적정 부채비율 G보다 높은 부채비율을 나타내므로 이 경우에도 위의 대리인 이론의 경우에서 처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過多借入金에 대한 損金不算入 등)이 존재근거를 가지게 된다.

나. 資本過少化를 통한 租稅回避行爲에 대한 規制

기업의 財務構造의 개선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정부의 정책목표는 기업의 자기자본 사용이 借入金 利用에 비하여 불리하도록 되어 있는 세제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을 借入金の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이다. 정부의 이러한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資本過少化 행위는 과연 어느 정도의 잠재적 조세회피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지배주주와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과세방법이 다르므로 이를 나누어서 취급한다.

1) 國外支配株主의 境遇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을 제공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차입금의 형태로 假裝할 때 얻을 수 있는 租稅回避效果를 다음과 같이 수량화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t_c : 법인세율

t_i : 이자에 대한 원천소득세율

t_d : 배당에 대한 원천소득세율

- r : 투자수익률
 i : 시장이자율
 Z : 투자수익유보율

을 의미하며 상점자 A는 거주지국(Home Country), B는 원천지국(Host Country)을 나타낸다.

우선 법인세가 투자수익률(r)이나 시장이자율(i) 등의 내생변수에 대해 미치는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고⁸⁾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를 무시하는 경우 借入金으로 자금을 제공시에 자본 1단위의 투자에 대하여 A국과 B국에서의 세부담의 합 T_D 는 다음과 같다.

$$(1) t_c^B \leq t_c^A \text{ 일때 } T_D = (r^B - i^B)t_c^B + i^B \cdot t_c^B + i^B(t_c^A - t_c^B)$$

$$(2) t_c^B > t_c^A \text{ 일때 } T_D = (r^B - i^B)t_c^B + i^B \cdot t_c^B$$

이때 $(r^B - i^B)t_c^B$ 는 법인단계의 과세를, $i^B \cdot t_c^B$ 는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소득세를, 그리고 $i^B(t_c^A - t_c^B)$ 는 거주지국에서의 과세를 나타낸다. 이처럼 외국에 투자된 자본으로부터 투자수익이 투자자의 거주지국으로 송금될 때 거주지국에서 또 한번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이나 조세조약의 규정을 통한 두 가지 방법이 채택된다. 그 중 外國所得免除制度⁹⁾는 이

8) 법인세율의 변화가 투자수익률이나 시장이자율 등의 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실제적으로 없을 수는 없으나 여기서의 투자수익률은 과세전 투자수익률이므로 법인세율의 변화에 극히 간접적인 영향밖에 받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자율에 미치는 법인세율의 영향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이러한 가정이 추정결과에 미치는 왜곡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9) 外國所得免除制度는 居住地國이 源泉地國에서 과세된 外國事業所得을 국내 과세대상으로부터 免除해 주는 제도로서, 실질 租稅管轄權은 源泉地國만이 가지게 되어 국제적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결된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제도의 변형으로서 累進

자소득에 대해서는 자주 사용되어지지 않으며 外國稅額控除制度¹⁰⁾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위에서 $i^B(t_c^A - t_c^B)$ 는 이자소득 i^B 에 대하여 거주지국의 세율 t_c^A 로 과세되는데 투자자가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인 원천소득세 t_c^B 를 공제해준다는 의미이다. 위의 (1)에서 $t_c^B \leq t_c^A$ 는 完全稅額控除可能狀態(deficit credit position)에 있는 경우이고 (2)의 $t_c^B > t_c^A$ 인 경우는 외국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불완전세액공제상태(excess credit position)의 경우로서 거주지국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이와는 반대로 自己資本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a) t_c^B \leq t_c^A \text{ 일 때 } T_E = r^B \cdot t_c^B + r^B(1-t_c^B)(1-Z)t_d^B \\ + r^B(1-t_c^B)(1-Z)(t_c^A - t_d^B)$$

$$(b) t_c^B > t_c^A \text{ 일 때 } T_E = r^B \cdot t_c^B + r^B(1-t_c^B)(1-Z)t_d^B$$

로서 이때 $r^B \cdot t_c^B$ 는 법인단계의 과세를, $r^B(1-t_c^B)(1-Z)t_d^B$ 는 배당에 대한 원천소득세를, 그리고 $r^B(1-t_c^B)(1-Z)(t_c^A - t_d^B)$ 는 외국세액공제제

付免除制度(exemption with progression)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 과세된 해외원천소득에 대해서 거주지국에서 과세하지 않으나 國內所得에 대한 累進稅率 적용시 과세소득에서 제외된 외국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 10) 外國稅額控除制度는 투자자의 외국원천소득에 대해서 원천지국이 부과한 세액을 거주지국의 정부가 투자자의 과세부담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外國所得免除制度와 外國稅額控除制度의 차이는 전자가 소득 그 자체에 착안하여 외국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포기하는 제도인 반면, 후자는 소득에 과세된 조세에 착안하여 과세권을 유보하면서 실제적인 세부담면에서 조정하려는 제도라는 점에 있다. 外國稅額控除制度에는 거주지국이 외국에서 납부한 투자자의 세액을 자국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전액공제하는 完全稅額控除方法(full credit)과 당기의 법인세액에 그 전세계소득에 대한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인정해주는 通常稅額控除方法(ordinary credit)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외국소득을 발생국가별로 과세하느냐 합산하여 계산하느냐에 따라 國別限度制(per country limitation)와 一括限度制(overall country limitation)로 구분된다.

도하에서 거주지국에서의 과세를 의미한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_d^B > t_c^A$ 인 경우에는 거주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외국세액공제제도 대신에 間接外國稅額控除制度¹¹⁾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원천지국에서의 배당에 대한 원천소득세액 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이윤에 대한 법인세 부담에 대하여도 거주지국에서 稅額控除되므로

(c) $t_c^A \geq t_c^B + (1 - t_c^B)t_d^B$ 일 때

$$T_E = r^B \cdot t_c^B + r^B(1 - t_c^B)(1 - Z) t_d^B + r^B(1 - Z)(t_c^A - t_c^B) - r^B(1 - Z)(1 - t_c^B)t_d^B \text{ 이며}$$

이때 $r^B(1 - Z)(t_c^A - t_c^B)$ 는 자회사의 이윤에 대한 법인세부담의 세액 공제를 그리고 $r^B(1 - Z)(1 - t_c^B)t_d^B$ 는 配當所得에 대한 원천소득세부담의 세액공제를 의미한다.

(d) $t_c^A < t_c^B + (1 - t_c^B)t_d^B$ 일 때에는 거주지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T_E = r^B \cdot t_c^B + r^B(1 - t_c^B)(1 - Z)t_d^B$$

위의 여덟 가지 경우를 각각 살펴보면

1a) $t^B \leq t_c^A$, $t_d^B \leq t_c^A$ 가 일반적인 경우로

$$T_E = r^B \cdot t_c^B + r^B(1 - t_c^B)(1 - Z)t_d^B$$

$$T_D = (r^B - i^B)t_c^B + i^B \cdot t_c^A$$

11)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브라질과의 租稅條約에 이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에게 이윤을 송금할 때 이 이윤에 대한 원천지국의 원천소득세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법인세부담에 대하여도 稅額控除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세회피효과는

$$\begin{aligned} T_x &= T_E - T_D \\ &= r^B \cdot t_c^B - (r^B - i^B)t_c^B + r^B(1 - t_c^B)(1 - Z)t_c^A - i^B \cdot t_c^A \\ &= t_c^B \cdot i^B + t_c^A \{r^B(1 - t_c^B)(1 - Z) - i^B\} \\ &= i^B(t_c^B - t_c^A) + t_c^A \cdot r^B(1 - t_c^B)(1 - Z) \text{이다.} \end{aligned}$$

(2a) $t_i^B > t_c^A$, $t_d^B \leq t_c^A$ 인 경우

$$\begin{aligned} T_E &= r^B \cdot t_c^B + r^B(1 - t_c^B)(1 - Z)t_d^B + r^B(1 - t_c^B)(1 - Z)(t_c^A - t_d^B) \\ T_D &= (r^B - i^B)t_c^B + i^B \cdot t_i^B \end{aligned}$$

조세회피효과는

$$\begin{aligned} T_x &= T_E - T_D \\ &= \{r^B \cdot t_c^B + r^B(1 - t_c^B)(1 - Z)t_c^A - (r^B - i^B)t_c^B - i^B \cdot t_i^B\} \\ &= \{i^B(t_c^B - t_i^B) + t_c^A \cdot r^B(1 - t_c^B)(1 - Z)\} \text{이다.} \end{aligned}$$

(1b) $t_i^B \leq t_c^A$, $t_d^B > t_c^A$ 인 경우

$$\begin{aligned} T_E &= r^B \cdot t_c^B + r^B(1 - t_c^B)(1 - Z)t_d^B \\ T_D &= (r^B - i^B)t_c^B + i^B \cdot t_i^B + i^B(t_c^A - t_i^B) \end{aligned}$$

조세회피효과는

$$\begin{aligned} T_x &= T_E - T_D \\ &= \{r^B \cdot t_c^B + r^B(1 - t_c^B)(1 - Z)t_d^B - (r^B - i^B)t_c^B - i^B \cdot t_c^A\} \\ &= \{i^B(t_c^B - t_c^A) + t_d^B \cdot r^B(1 - t_c^B)(1 - Z)\} \text{이다.} \end{aligned}$$

2b) $t_i^B > t_c^A$, $t_d^B > t_c^A$ 인 경우

$$T_E = r^B \cdot t_c^B + r^B(1-t_c^B)(1-Z)t_d^B$$

$$T_D = (r^B - i^B)t_c^B + i^B \cdot t_i^B$$

조세회피효과는

$$T_X = T_E - T_D$$

$$= \{r^B \cdot t_c^B + r^B(1-t_c^B)(1-Z)t_d^B - (r^B - i^B)t_c^B - i^B \cdot t_i^B\}$$

$$= \{i^B(t_c^B - t_i^B) + t_d^B \cdot r^B(1-t_c^B)(1-Z)\} \text{ 이다.}$$

1c) $t_i^B \leq t_c^A$, $t_c^A \geq t_c^B + (1-t_c^B)t_d^B$ 일 때

$$T_E = r^B \cdot t_c^B + r^B(1-t_c^B)(1-Z)t_d^B + r^B(1-Z)(t_c^A - t_c^B)$$

$$- r^B(1-Z)(1-t_c^B)t_d^B$$

$$T_D = (r^B - i^B)t_c^B + i^B \cdot t_i^B + i^B(t_c^A - t_i^B)$$

따라서 조세회피효과는

$$T_X = T_E - T_D$$

$$= r^B \cdot t_c^B + r^B(1-t_c^B)(1-Z)t_d^B + r^B(1-Z)(t_c^A - t_c^B)$$

$$- r^B(1-Z)(1-t_c^B)t_d^B - \{(r^B - i^B)t_c^B + i^B \cdot t_i^B + i^B(t_c^A - t_i^B)\}$$

$$= r^B(1-Z)(t_c^A - t_c^B) + i^B(t_c^B - t_c^A)$$

(2c) $t_c^A \geq t_c^B + (1-t_c^B)t_d^B$, $t_i^B > t_c^A$ 일 때

$$T_E = r^B \cdot t_c^B + r^B(1-t_c^B)(1-Z)t_d^B + r^B(1-Z)(t_c^A - t_c^B)$$

$$- r^B(1-Z)(1-t_c^B)t_d^B$$

$$T_D = (r^B - i^B)t_c^B + i^B \cdot t_i^B$$

따라서 조세회피효과는

$$\begin{aligned} T_X &= T_E - T_D \\ &= r^B \cdot t_c^B + r^B(1-t_c^B)(1-Z)t_d^B + r^B(1-Z)(t_c^A - t_c^B) \\ &\quad - r^B(1-Z)(1-t_c^B)t_d^B - \{(r^B - i^B)t_c^B + i^B \cdot t_i^B\} \\ &= r^B(1-Z)(t_c^A - t_c^B) - i^B(t_i^B - t_c^B) \end{aligned}$$

(1d) $t_i^B > t_c^A$, $t_c^A < t_c^B + (1-t_c^B)t_d^B$ 일 때

$$\begin{aligned} T_E &= r^B \cdot t_c^B + r^B(1-t_c^B)(1-Z)t_d^B \\ T_D &= (r^B - i^B)t_c^B + i^B \cdot t_i^B + i^B(t_c^A - t_i^B) \end{aligned}$$

따라서 조세회피효과는

$$\begin{aligned} T_X &= T_E - T_D \\ &= r^B \cdot t_c^B + r^B \cdot (1-t_c^B)(1-Z)t_d^B - \{(r^B - i^B)t_c^B + i^B \cdot t_c^A\} \\ &= r^B(1-Z)(1-t_c^B)t_d^B - i^B(t_c^A - t_c^B) \end{aligned}$$

(2d) $t_i^B > t_c^A$, $t_c^A < t_c^B + (1-t_c^B)t_d^B$ 일 때

$$\begin{aligned} T_E &= r^B \cdot t_c^B + r^B(1-t_c^B)(1-Z)t_d^B \\ T_D &= (r^B - i^B)t_c^B + i^B \cdot t_i^B \end{aligned}$$

따라서 조세회피효과는

$$\begin{aligned} T_X &= T_E - T_D \\ &= r^B \cdot t_c^B + r^B(1-t_c^B)(1-Z)t_d^B - \{(r^B - i^B)t_c^B + i^B \cdot t_i^B\} \\ &= r^B(1-Z)(1-t_c^B)t_d^B - i^B(t_i^B - t_c^B) \end{aligned}$$

거주지국에서 외국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제도 중에 위에서 언급하는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대안으로서 外國所得免稅制度가 있다. 이 제도는 위의 모델에서 (2b)의 경우 즉 외국세액공제 제도에서 불완전세액공제상태(excess credit position)인 경우와 모델 설정은 동일하다. 따라서 추정결과도 같게 된다.

위의 여덟 가지 경우 중 (1b)와 (2a), (2c)인 경우는 현실성이 없는 데 이는 배당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차이가 나더라도 한쪽은 법인세율보다 높고 다른 쪽은 법인세율보다 낮은 경우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租稅回避效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의 값이 각 경우에 맞도록 가정하고 이때의 각 변수들의 조세회피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회피 효과 자체를 수량화해보면 (1a), (2b), (1c), (1d), (2d)의 경우에 <表 II-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즉, r^B , i^B , Z , t_a^B , t^B , t_c^A , t^B 의 변수들의 값이 <表 II-1>과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租稅回避效果는 <表 II-1>과 같다. 또 추가적으로 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변수의 값을 설정하여 보았다. 즉 r^B , Z 와 i^B 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고 세율변수들은 t_a^B 와 t^B 의 경우 韓·美租稅條約상의 배당과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그리고 t_c^A 와 t^B 의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의 최고소득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산정하였다.

위의 변수들의 값은 각 경우의 가정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주어졌다. 일반적으로 租稅條約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이자나 배당에 대한 원천소득세율은 평균적으로 10% 내외에서 결정되고 각국의 법인세율은 20~5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범위의 30%를 선택하였다.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2b), (2d), (1c)의 경우로서 (2b), (2d)의 경우는 국가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원천지국의 세부담이 높아서 稅額控除가 완전하게 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원천지국의 원천소득세율이 매우 높다. (1c)의 경우는 원천지국이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세부담을 크

게 낮추어주는 경우를 설정하기 위하여 원천지국의 법인세율을 낮게 설정하였다.

	r^B	Z	i^B	t_d^B	t_i^B	t_c^A	t_c^B
(1a)	0.2	0.5	0.1	0.1	0.1	0.3	0.3
(2b), (2d)	0.2	0.5	0.1	0.4	0.4	0.3	0.3
(1c)	0.2	0.5	0.1	0.1	0.1	0.3	0.1
(1d)	0.2	0.5	0.1	0.1	0.1	0.3	0.3
미국의 對韓 직접투자의 경우	0.2	0.5	0.1	0.1	0.12	0.35	0.28

〈表 II - 1〉 租稅回避效果 分析(國外支配株主의 境遇)

(單位 : %)

	$\frac{dT_x}{dt_c^A}$	$\frac{dT_x}{dt_c^B}$	$\frac{dT_x}{di^B}$	$\frac{dT_x}{dr^B}$	$\frac{dT_x}{dt_d^B}$	$\frac{dT_x}{dt_i^B}$	$\frac{dT_x}{dZ}$	조세회피효과	
								투자규모 대비	투자수익 규모대비
(1a)	-	+	±	+			-	2.1	10.5
(2b), (2d)		+	-	+	+	-	-	1.8	9.0
(1c)	+	0	-	+			-	0	0
(1d)	-	0	±	+	+		-	0.7	3.5
미국의 對韓 직접투자의 경우								0.02	0.1

전체적으로 볼 때 特殊關係企業이 실질적인 자기자본제공을 借入金의 형태로 假裝하여 外國의 자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租稅回避效果는 원천지국의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익요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이때 T_x 는 투자규모의 0~2.1%, 그리고 투자수익의 0~10.5%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1d)에 해당하며 조세회피효과를 추정하여 보면 투자규모의 0.02%, 투자수익의 0.1% 정도가 된다. 이때 租稅回避效果는 잠재적인 조세회피 가능규모를 지칭하는 것이며 위에서 언급된 투자규모의 0~2.1% 그리고 투자수익의 0~10.5%라는 범위는 0%가 최소값, 10.5%가 최대값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위에서 설정된 가정 하에서 이 정도의 잠재적인 조세회피 가능성이 추정되었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경우들을 비교해 본다면 우선 조세조약이 책정되어 원천지국의 과세가 제한된 경우인 (1a)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인 (2b)보다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는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이윤에 대한 법인세 부담에 대하여도 거주지국에서 稅額控除되므로 차입금의 형태로 자본을 제공하는 경우보다 자기자본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오히려 적을 수 있다. 즉 看做外國稅額控除制度를 채택하는 (1c), (1d)의 경우는 (1a), (2b)의 2.1%, 1.8%보다 적은 0%와 0.7%의 작은 조세회피효과를 보이고 있다.

2) 國內支配株主의 境遇

국내지배주주가 국외지배주주의 경우와 같이 자기자본을 제공하면서 형식적으로 차입금의 형태로 假裝할 때 얻을 수 있는 租稅回避效果도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金融所得綜合課稅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전체 금융소득의 96.0%가 분리과세되었는데 그 중 이자소득은 99.1%이고 배당소득은 56.8%가 분리과세되었다. 金融所得綜合課稅의 진전으로 현재 이보다는 더 높은 비율의 綜合課稅가 시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경우 그리고 이자소득이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경우의 조합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중 이자소득은 綜合課稅되고 배당소득은 分離課稅되는 경우는 위의 소득별 종합과세 진전내용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세 가지 경우만을 다루기로 한다.

우선 두 가지 소득이 모두 綜合課稅되는 경우는

$$T_D = (r-i)t_c + i \cdot t_p$$

$$T_E = (r \cdot t_c) + r(1-t_c)(1-Z)t_p(1.19) - r(1-t_c)(1-Z)(0.19) \text{이며}$$

이때 $r(1-t_c)(1-Z)(0.19)$ 는 배당소득에 대한 控除制度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t_p 는 투자자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이다¹²⁾.

따라서 조세회피효과는

$$T_X = T_E - T_D$$

$$= (r \cdot t_c) + r(1-t_c)(1-Z)(1.19t_p - 0.19) - (r-i)t_c - i \cdot t_p$$

$$= r(1-t_c)(1-Z)(1.19t_p - 0.19) + i(t_c - t_p)$$

다음으로 이자는 分離課稅 그리고 배당은 綜合課稅되는 경우는

$$T_D = (r-i)t_c + i \cdot t_i$$

$$T_E = (r \cdot t_c) + r(1-t_c)(1-Z)t_p(1.19) - r(1-t_c)(1-Z)(0.19) \text{이며}$$

12) 配當稅額控除制度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배당세액의 22%를 종합소득세 산출시 공제해주도록 되어 있고 1997년 1월 1일부터는 19%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효과는

$$\begin{aligned} T_x &= T_E - T_D \\ &= (r \cdot t_c) + r(1-t_c)(1-Z)(1.19t_p - 0.19) - (r-i)t_c - i \cdot t_i \\ &= r(1-t_c)(1-Z)(1.19t_p - 0.19) + i(t_c - t_i) \end{aligned}$$

마지막으로 두 가지 소득이 모두 分離課稅되는 경우는

$$\begin{aligned} T_D &= (r-i)t_c + i \cdot t_i \\ T_E &= (r \cdot t_c) + r(1-t_c)(1-Z) \cdot t_d \text{이며} \end{aligned}$$

따라서 조세회피효과는

$$\begin{aligned} T_x &= T_E - T_D \\ &= (r \cdot t_c) + r(1-t_c)(1-Z)t_d - (r-i)t_c - i \cdot t_i \\ &= r(1-t_c)(1-Z)t_d + i(t_c - t_i) \end{aligned}$$

租稅回避效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의 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이때의 각 변수들의 조세회피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회피효과 자체를 수량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즉 $r=0.2$, $i=0.1$, $t_c=0.28$, $t_i=0.15$, $t_d=0.15$, $t_p=0.40$, $Z=0.5$ 이라고 가정할 경우 조세회피효과는 <表 II-2>와 같다.

즉 租稅回避效果는 국외지배주주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익유보율이 낮을수록 커지나 그 규모면에서는 두 가지 소득이 모두 종합과세되는 경우는 국외지배주주의 경우보다 낮은 T_x 는 투자규모의 0.86% 그리고 투자수익의 4.3% 정도가 된다. 반면에 두 가지 소득을 모두 분리과세할 경우, 즉 이자는 분

리과세, 배당은 종합과세할 경우는 국외지배주주의 경우보다 높은 T_x 는 투자규모의 2.38~3.36% 그리고 투자수익의 11.9~16.8% 정도가 된다.

〈表 II -2〉 租稅回避效果 分析(國內支配株主의 境遇)

(單位: %)

	$\frac{dT_x}{dt_c}$	$\frac{dT_x}{di}$	$\frac{dT_x}{dr}$	$\frac{dT_x}{dt_p}$	$\frac{dT_x}{dt_d}$	$\frac{dT_x}{dt_i}$	$\frac{dT_x}{dZ}$	조세회피효과	
								투자규모 대비	투자수익 규모대비
이자:종합과세 배당:종합과세	+	-	+	-			-	0.86	4.3
이자:분리과세 배당:종합과세	+	+	+	+			-	3.36	16.8
이자:분리과세 배당:분리과세	+	+	+		+		-	2.38	11.9

Ⅲ. 우리나라의 現行 過少資本規制制度

1.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上의 過少資本規制制度

선진국의 과소자본규제제도 도입과 외국계기업에 대한 차별적 적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過少資本規制制度 導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1995년 9월에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면서 과소자본규제제도가 도입되었다.

가. 過少資本 基準比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의 借入金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支給保證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支給利子 및 割引料는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¹³⁾의 규정에 따라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借入金の 倍數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신속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 제26조

13)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損金에 算入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서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일반적인 경우의 3배를 대신하여 金融業의 경우에는 6배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소자본규제제도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과 차입금의 비율을 1對3으로 규정하여 過少資本規制制度의 형태를 고정비율형¹⁴⁾으로 하고 있으나 동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예외적인 경우¹⁵⁾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서 독립기업간원칙형을 가미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14조 제3항).

- 14) 過少資本規制制度는 크게 고정비율형과 독립기업간원칙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固定比率型(Fixed Ratio Approach)은 특수관계회사의 負債(차입금 등)가 자본지분의 一定比率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응하는 차입금등의 지급이자의 손금성을 부인하는 제도이다. 전통적인 접근방법인 獨立企業間原則型(남용방지형: Antiabuse Approach)은 비정상적인 용자가 있는 경우 조세회피방지규정, 남용방지규정 혹은 실질과세의 원칙(Substance over Form)에 의해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용자를 숨겨진 자본 혹은 그 지급이자를 利益配當의 假裝으로 인식한다. 이때 판단기준은 독립기업간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過多利子는 배당으로 보아 과세된다. 이는 이전가격세제와 유사하나 이전가격세제가 이자율의 高低에 의해 규제하는 데 반해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 15)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이란 국외 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거나 제26조에서 정한 業種別 倍數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첫째,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회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둘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 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조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은 납세의 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借入金의 範圍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상 借入金이란 이자 및 할인료¹⁶⁾를 발생시키는 負債를 말하며 외상매입금, 단기성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선수수익, 장·단기부채성충당금 등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부채는 제외한다.

또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일지라도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거나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損金不算入 規定이 적용된다. 다만, 내국법인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國外特殊關係者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에는 차입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만 損金不算入 規定이 적용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15조).

다. 出資資本의 範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의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 당해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 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控除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16)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 및 할인료는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利子所得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建設資金利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資本金比率의 계산은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게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둘째,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라. 損金不算入額의 算定方法

損金算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text{손금불산입액} = (A) \times \frac{(B) - (C)}{(B)}$$

- A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 및 할인료
- B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 C :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의 3배 또는 업종별 배수

마. 國外 支配株主의 範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國外支配株主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實質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 출자자 또는 본점으로서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이를 내국법

인의 경우, 이차지급일 현재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¹⁷⁾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 또는 출자자 그리고 이차지급일 현재 임원의 선임, 임원에 의한 주식소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實質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⁸⁾. 그 외에 외국법인의 國內事業場의 경우에는 이차지급일 현재 동 외국법인의 본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17)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국제거래의 일방이 내국법인 또는 國內事業場의 경우 특수관계에 대한 주식의 間接所有比率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첫째,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주식에 동 타방법인의 주식이 동 타방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당해 주주인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는 각 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둘째,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유비율에 당해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당해 주주인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두 가지 계산방법은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과 일방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존재되어 이들 법인들이 주식 소유관계를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18)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國外事業場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 ① 一方法人の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것
- ② 一方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 ③ 一方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他方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 ④ 一方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타방에 의한 支給保證을 통하여 조달할 것
- ⑤ 一方이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無體財產權에 주로 의존하며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바. 其他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支給利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동등한 과세기간 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損金不算入된 지급이자를 按分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¹⁹⁾의 규정에 의한 배당 및 기타 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²⁰⁾ 및 제18조의 3²¹⁾의 규정의 다른 이자의 損金不算入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16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源泉徴收한 경우에는 配當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²²⁾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28조).

19) 주 2)를 참고할 것.

20)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는 다음과 같이 차입금의 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 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급금
- 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③ 채권, 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

21)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다.

- ①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 ② 차입금과다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이 다른 법인의 주식,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22) 주 3)을 참고할 것.

2. 國內資本에 대한 過少資本規制 現況 및 政策方向

가. 現行 借入金에 대한 損金不算入制度

法人稅法에서는 우선 기업들의 타인자본에의 의존도를 줄이고 自己資本에 의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부동산투기 거래를 방지하고 기업자금이 생산자금으로 운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동산을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特殊關係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損金不算入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일정기준을 정하여 초과액에 상당하는 支給利子만 손금불산입하였으나, 199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5호) 이를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법인세법 부칙 2).

또한 借入金 過多法人(비영리법인을 포함)이 다른 법인의 주식이나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損金不算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자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한편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支給利子 損金不算入額의 計算

$$\text{손금불산입액}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text{총 차입금}}$$

2) 借入金 過多法人이 支給한 借入金의 利子 등 損金不算入할 金額

소비성 서비스업²³⁾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의 경우 損金否認 對象金額은 타법인의 주식 및 임야 등의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 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상금액은 타법인의 주식 및 임야 등의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입금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나. 借入金에 대한 損金不算入制度의 改正方向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過少資本稅制를 앞으로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국내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내기업의 경우, 부채가 자본금의 두 배 이상인 기업이 차입금을 비업무용 부동산, 타회사의 주식, 임야·농야·농경지·목장용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만 자본금의 두 배를 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損費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용대상 기업을 負債의 限度額이 자본금의 3배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차입금 용도에 관계없이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損費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 系列企業間 支給保證制限 規定

1993년에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대한 편중여신을 억제하고 부실계열사의 退出을

2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오락 서비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을 말한다.

촉진하기 위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債務保證의 制限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 제2항의 채무보증 제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간 債務保證을 자기자본의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지난 3년간 30대 기업집단의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은 1993년 4월의 평균 342.4%에서 현재 100% 이하로 대폭 감소되어 동 제도는 경제력 집중완화 및 대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상당부분 중복보증의 해소, 계열사간 보증대체 등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의 금융수급구조 및 관행의 변화추세 등을 고려할 때 부실계열사의 퇴출촉진 및 편중여신의 시정 등을 위해서는 계열사간 보증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30대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自己資本對比 200% 이하로 규정된 債務保證限度를 1999년 3월말까지 100%, 그후 3년 내(2002년 3월말까지)에 0%로 낮추고 아울러 예외인정 대상범위도 축소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예외인정 대상은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인수하는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 국내 금융기관의 국외지점 여신에 대한 보증 그리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라. 海外投資資金에 대한 最小 自己資本調達比率制度

건실한 海外投資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적정수준 자금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자금 조달비율을 설정·운용하려는 취지하에 海外直接投資指針으로 마련되었던 최소 자기자본비율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각각 20~40%, 10~30%로 규정되어 있던 자기자본비율을 1992년 9월로 폐지함으로써 최소 자기자금조달 의무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어졌다. 반면 현행 外貨資金貸出制度에서는 소요금액의 80~90%만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중 해외직접투자비용 자금에 대해서는 70~8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95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된 「해외직접투자 등의 통첩」에 의하면 폐지되었던 최소

자기자금조달비율을 국내외 금융차입에 의한 해외투자의 증가가 국민경제에 끼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해외투자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表 Ⅲ-1>과 같이 설정하여 다시 운용하고 있다.

〈表 Ⅲ-1〉 最小 自己資金調達 比率 設定基準

	비율
1억달러 이하	자기자금조달비율 10% 이상
1억달러 이상	자기자금조달비율 20% 이상
증액투자로 총투자액이 1억달러 초과시	증액분에 대한 20% 이상 자기자금 조달

資料 : 재정경제원 국제투자과, 『海外直接投資 許可 等の 通牒』, 1995. 10.

마. 海外投資資金에 대한 支給保證 制限制度

우리나라의 현행제도는 기업이 소규모의 출자로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에 현지법인의 명의로 국내 支給保證을 통하여 거액의 현지금융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한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다만, 보증형태가 은행보증, 모기업보증, 모기업의 계열기업보증인 경우에만 外國換銀行長의 認證이 필요하였으며 지급보증을 통한 차입금은 무역관련자금, 해외건설용역관련자금, 시설재구입자금, 일반관리용 운영자금, 거주자의 해외투자자금 등 11개의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는 규정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海外直接投資 許可 等の 通牒」은 현지법인 설립 후 국내 지급보증에 의한 과도한 현지금융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총투자액의 50%까지만 지급보증을 인정하고 50% 초과 국내 지급보증은 투자로 간주되는 지급보증금액이 1억달러 초과시는 20% 이상을, 1억달러 이하는 10% 이상 본사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지급보증한도는 현지법

인을 설립한 국내모기업의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타계열기업, 은행 등의 지급보증도 당해 모기업의 보증으로 간주하여 한도를 관리하며 타계열기업과 공동출자하여 현지법인 설립하는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출자한 기업을 모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IV. 外國의 過少資本規制制度 運營現況

1. 美國

가. 根據 法令 및 制度의 形態

1969년에 도입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 IRC)의 제 385조에서는 독립기업간원칙제도의 입장에서 과소자본에 있는 법인이 특별관계회사로부터 거액을 차입하고 있을 경우 그 초과차입에 상당하는 支給利子를 配當으로 간주하고 있다. 위의 조항의 실행에 필요한 규정이 1980년에 제안되었다가 1983년에 산업계의 반대로 철회된 후 지금까지 대체되지 않고 있다.

1989년 IRC 제163조(支給利子の 損金算入規定)에 (j)항을 추가하여 「비과세특수관계자에 대한 손금산입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992년에 그 규칙안을 공표하고 1993년에 그 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이는 固定比率型의 과소자본규제제도이다.

나. 過少資本 基準

負債 對 資本比率이 1.5 對 1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소자본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 超過負債 處理方法

超過支給利子가 있는 연도의 비과세이자 중 초과이자 상당액은 그 과

세소득의 계산상 損金不算入은 차기 이후 무제한으로 이월할 수 있고 한도액이 발생한 연도에 손급산입을 할 수 있다.

※ 超過支給利子 = 법인의 순지급이자(지급이자 - 수취이자) - (법인의 조정과세소득의 50% 상당액 + 이월한도 여유액)

- ① 限度額이란 법인의 순지급이자액이 조정소득금액의 1/2 미만인 연도에 그 미달인 금액으로서 3년간 이월할 수 있음.
- ② 調整課稅所得이란 법인의 과세소득에 순지급이자액, 순영업손실의 이월, 감가상각비, 비과세이자액 등을 가산하고, 매각자산의 감가상각비, 연결기업그룹간의 주식 매각, 처분의 투자조정액 등을 감산하여 계산함.

라. 特殊關係者의 範圍 등 適用對象

국내기업 및 미국내 사업에 實質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이득(gain), 손실이 있는 외국기업(특수관계기업그룹)이 特殊關係者(직·간접적으로 50%를 초과하는 자본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이자로서 그 수취자에게 대해서는 미국의 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고 있는 것에 대한 支給利子에 적용된다.

마. 特殊關係者의 保證을 통한 債務 處理 與否

자회사가 특수관계자(통상 모기업)의 保證에 의해 제3자(은행 등)로부터 받은 융자에 대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借入으로 간주한다.

바. 内外國法人의 差別待遇 問題

조세조약의 無差別取扱條項을 회피하기 위하여 규정상 적용대상을 외국법인과 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國內의 非課稅法人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미국의 국내법상 비과세로 되는 것은 대부분 외국법인이

므로 실질적으로 외자계기업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 其他

법인의 부채·자본의 비율이 1.5 對 1 이하인 경우에는 본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Safe Harbor Test가 있다.

아. 特徵

IRC 제163조 (j)규정은 제385조가 전통적인 접근방식인 실질과세에 의거하여 過多借入을 부인하여 配當으로 보는 것(독립기업간원칙형)과 달리 단지 거액의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의 損金算入을 부인하는 것뿐으로 과세소득을 확보 혹은 확대(Earnings Stripping의 방지)하고자 하는 固定比率型 制度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외자계기업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인정하고 있는 輕減稅率의 혜택이 일방적인 미국 국내법에 의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른바 Treaty Override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保證融資는 반드시 범규회피가 아니고 각종 장점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을 규제하지 않으면 범규의 적용이 회피되기 쉬워 도리어 직접차입의 경우에 비하여 불공평하게 될 우려가 있는바, 1993년에 삽입된 모회사 등의 보증에 의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용자에 대해서도 母會社 등으로부터의 차입이라고 간주하는 규정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다만 미국의 규정이 자세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보증차입 조건 등이 제3자의 차입조건과 동일한 경우(독립기업간가격)에는 그 적용을 제외해야 할 것이다.

2. 英國

가. 根據 法令

過少資本稅制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소득세 및 법인세법 (ICTA) 제209조에 看做配當規定이 있으나 조항만 존재하며 과세한 예나 예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규정은 조세조약의 무차별조항에 저촉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영국이 체결한 많은 조세조약에서는 이 외국 모회사에 대한 지급이자에 관해서는 獨立企業間原則의 취지를 따르고 있다.

ICTA 제770~773조에서 정하는 이전가격 세제가 근거법규로서 과대이자율을 부인하고 있다.

나. 過少資本 基準

국내법에서는 過少資本, 즉 부채·자본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우선 독립기업간원칙이 충족될 경우 독립기업간 이자율이면 控除가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도 부채의 규모, 부채·자본비율 등의 요소를 국세청이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에 의거 看做配當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부채·자본제한은 實務上 1對1부터 6對1까지 적용한다.

다. 超過負債 處理方法

영국 국세청은 부채·자본비율이 일정률을 초과하는 借入金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損金否認한다.

라. 特殊關係者의 範圍 등 適用對象

ICTA 제209조 (2)(e)(iv)와 (v)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그 주식의 75%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 모회사의 대부에 대한 支給利子 등은 配當으로 보아 損金算入을 인정하지 않는다.

마. 特殊關係者의 保證을 통한 債務 處理 與否

본사의 支給保證도 원칙적으로 차입금에 포함시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 영국 국세청의 입장이다²⁴⁾.

바. 内外國法人의 差別待遇 問題

外國法人에게만 과소자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사. Safe Harbor

지급이자가 지급이자 공제 전 이익의 3분의 1 이하이면 損金算入을 인정한다.

24) 1995년 영국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한 상사법인과과의 면담에서 韓·英租稅條約 제9조(특수관계기업조항) 「特殊關係企業間의 尙業尙 또는 支給尙의 關係에 있어 특수 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되었을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다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 때문에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않은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만일 특수관계에 있는 본사의 지급보증 없었다면 현지법인은 과도한 차입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현지법인이 본사의 지급보증 없이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만 차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법인의 過多借入金에 대한 지불이자의 과세논리를 제시하였다.

아. 其他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外國特殊關係者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독립기업간원칙의 취지에 따라 그 해결을 도모하고 過大利率에 대하여는 ICTA 제770~773조에 정하는 이전가격세제가 근거법규로 되는 것이나 지급이자를 看做配當으로 하는 부채·이자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적규정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3. 獨逸

가. 根據 法令

1993년 이전까지는 移轉價格 課稅問題와 마찬가지로 근거법을 조세회피 방지의 일반규정인 조세통칙법(AO) 제42조의 남용방지 규정에 두었다가 1993년에 KSTG(법인세법) 제8a조에 過少資本稅制가 규정되게 되었다.

나. 過少資本 基準

숨겨진 配當²⁵⁾으로 보는 비거주자인 출자자(외국모기업)로부터의 借入金 등과 그 자기자본의 지분비율이 종전의 1對 1에서 1993년의 법인세법 제8a조 이후 원칙적으로 3對 1로 확대하고 있다. 이 한도액 계산 등의 기준이 되는 自己資本金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구해진다.

25) 독일에서는 과소자본 문제를 조세회피 행위의 한 형태로 간주, 숨겨진 자본, 숨겨진 배당으로서 취급하고 있음.

자기자본금 = 법정자본금

- 미불입자본금

+ 자본잉여금(적립금)

+ 이익적립금

+ 당기순이익

- 당기순손실

- 이월결손금

+ 상법 제273조에 따른 특별적립금의 1/2

-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계열사투자 장부가액

이 자기자본금의 계산에는 세무상의 두 가지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첫째, 독일의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原資로 하여 다른 자회사(손자회사)에 다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 출자계정은 자기자본액에서 控除하며 둘째, 공제항목인 당기 손실에 대해 일시적인 것이고 손실연도부터 3년 이내에 그 결손상태가 회복된 경우에는 자기자본에서의 공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超過負債 處理方法

내국법인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차입금 등의 融資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차입금 등이 자기자본금 중 그 출자자 지분 상당액의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숨겨진 자본으로 보아, 그것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損金否認된다.

외국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固定金利型에 의한 것일 경우 자기자본금 중 그 출자자 지분 상당액의 3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지급한 이자 등 보수는 손금성이 부인되고 숨겨진 配當으로 간주된다. 다만 모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그것으로 자회사에 대부한 경우 등 그 차입조건 등이 제3자간 차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인 경우(독립기업간원칙에 의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에 대한 판정은 약정서의 유무, 자회사의 변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다.

한편 이익참가대부나 익명조합에 의한 특별계약에 의한 자금공여인 이익참가형 차입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이를 전형적인 숨겨진 배당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규제할 움직임이었으나 법인세법 제8a조에서는 외국모회사에 지급된 이자 등 보수 중 그 출자지분 상당액의 50%까지에 대해서는 損金算入을 인정한다.

독일 자회사가 고정금리형과 이익참가형을 모두 하고 있을 경우에는 먼저 이익참가형 차입금에 대해 전술한 50%의 테스트를 한다. 만약 이익참가형 차입금이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6배까지를 한도로 하여 고정금리형 차입금을 통상의 차입금으로 하여 손금성을 인정하고 있다.

持株會社(Holding Company)인 경우에는 네 가지 특별규칙을 마련해 놓고 있다. 독일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고정금리형 차입금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支給利子 등의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차입금의 한도액은 그 출자지분 상당액의 9배까지로 확대되어 있다. 또 이익참가형 차입금과 고정금리형 차입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고정금리형 차입금의 한도액은 그 차액의 18배까지로 확대되어 있다. 더구나 자기자본의 계산에 있어서의 손자회사 등에 대해 다시 이루어지는 출자금계정의 자기자본금 공제는 持株會社에 한해 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규정에 따라 독일의 지주자회사에게 용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독일 지주자회사에게 용자하는 경우에 그 용자조건 등이 獨立企業間原則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등의 손금성은 부인되게 된다.

라. 特殊關係者の 範圍 등 適用對象

직·간접으로 자기자본금의 25%를 초과하여 자본참여하는 경우와
 ①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외국거주 주주 ② 특수관계법인 또는 관계자 ③ 상환청구권을 가진 제3자(예 : 은행)에 대한 지급이자도 그가

주주 등에 대해 지급보증이나 담보 등을 통해 당해 대여금의 상환청구권을 가진 경우의 여신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제8a조에 규정된 한계금액을 초과하는 한 숨겨진 利益配當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제3자가 독일 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예 : 독일소재 은행), 회사가 지급이자가 제3자의 과세대상소득으로 계상되며 同 支給利자가 제3자로부터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주주나 특수관계자에게 유출되지 않음(Back-to-back Financing)을 증명할 경우에는 支給利자를 숨겨진 이익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의 통상적인 공급 및 용역거래에서 발생하는 株主 또는 特殊關係者로부터 단기적으로 제공된 차입금은 물품(또는 용역) 공급자와 차입금 제공자가 동일하다면 법인세법 제8a조에 따른 차입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마. 内外國法人의 差別待遇 問題

위에서 독일 내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支給利자가 과세소득으로 계상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배당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등의 예외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제도의 주대상은 외국계기업이다.

바. 其他

지급이자의 配當看做는 회계연도중 일정시점에 株主借入金이 자기자본금의 3배 이하의 경우에 발생하지 않는 Safe Harbor가 적용된다. Safe Harbor는 회계연도중 一時的으로 차입금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였다면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동 기간에 적용되는 부분만 숨겨진 利益配當으로 간주하여 안분계산한다.

Safe Harbor를 넘어서는 株主借入金이라고 할지라도 동 차입금을 동일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동 차입금의 이자는

숨겨진 이익배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때는 특히 회사의 자산상태, 재무상태 등 신용정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회사는 이를 위해 Safe Harbor를 넘어서는 주주차입금을 제3자로부터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은행의 Credit Proposal, 신용평가서 등의 가능한 諸般書類를 첨부해야 한다.

4. 日本

가. 根據 法令

1992년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13에서 過少資本稅制를 규정하였다.

나. 過少資本 基準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外國支配株主 등에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① 및 ②의 비율이 모두 3배를 超過할 경우를 過少資本이라 하며 단, 내국법인은 3배수 대신에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사업규모 등이 유사한 것의 총이자부부채·순자산(자기자본) 비율에 비추어 타당한 倍數를 이용할 수 있다.

- ① 國외지배주주 등의 利子附負債²⁶⁾ × 자본지분비율 = 國외지배주주 등에 대한 利子附負債의 평균부채잔액/國외지배주주 등의 자본지분
- ② 總利子附負債 × 자기자본비율 = 總利子附負債의 평균부채잔액/자기자본액

26) 여기서 利子附負債란 지급이자를 발생시키는 부채를 말한다.

다. 超過負債 處理方法

부채이자 중 초과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소득금액계산상 損金不算入한다. 이때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은 다음 식에 의하지만 다만 내국법인의 총이자부부채의 평균부채잔액에서 3배액을 공제한 잔액이 算式의 分子額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이 分子의 금액으로 된다. 또한 국외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負債의 利子額은 그 사업연도에 비용으로서 계상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현금기준이 아닌 發生基準(채무확정주의)을 채택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text{손금불산입액} = \text{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부채의 이자액} \times \frac{(A) - \text{국외지배주주등의 자본지분의 3배}}{\text{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 등에 대한 이자부부채의 평균부채잔액(A)}}$$

損金不算入된 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소득으로 가산되고 社外流出處分으로 된다. 유럽 각국과 같이 이를 배당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일본은 고정비율에 의한 이자공제부인형을 채택하고 있어 배당으로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는 소득세법상 源泉徵收되고, 법인세법상은 손금불산입되어 과세관계는 종결되게 된다.

라. 特殊關係者의 範圍 등 適用對象

外國支配株主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서 적용대상 법인의 발행주식 등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계(모회사, 손자회사관계 등)에 있는 자와 동일한 자가 過少資本規制制度 적용대상 법인과 외국법인의 각각의 발행주식 등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적용대상 법인과의 관계(형제회사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및 적용대상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사이에 거래의 의존, 보증, 임원의 파견 등을 통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적용대상 법

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特殊關係者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지배기업의 현재 또는 과거의 임원 및 직원들이 적용대상 법인의 이사회 정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 또는 사장단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단, 외국지배기업이 적용대상기업에 상당량의 순환자본(working capital)을 제공하거나 두 기업의 주된 사업이 유사할 경우에 한한다.

마. 特殊關係者의 保證을 통한 債務 處理 與否

법조문상 母會社 등의 保證에 의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용자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별조치법 제4조에서는 동 지급이자가 제3자로부터 직·간접경로를 통해 주주나 특수관계자에게 유출될 경우에 대한 特別法을 설정하였다.

바. 内外國法人의 差別待遇 問題

외자계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 評價

위의 3배수 규정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固定比率型을 채택하여 해외 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이 자본지분의 일정비율(3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 손금성을 부인한다는 것이며 주로 외자계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조약의 無差別條項에 위배된다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OECD나 유럽 각국의 제도상의 요소인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독립기업간원칙도 일부 도입하여 특별규칙화한 것으로 보인다.

5. 프랑스

가. 根據 法令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利子費用控除는 높은 비율의 차입금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으로 프랑스세법(General Tax Code)은 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의 支給利子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칙을 두고 있다. 제39조(1.3)와 제212조에서 세액공제의 최고한도 및 세액공제 제외규정과 적용대상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나. 過少資本 基準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자기자본비율이 1.5對 1 이상인 부분은 과소자본으로 간주하며 이자는 配當으로 간주되어 源泉稅가 과세된다.

프랑스세법 제39조와 제212조에 의하면 오직 자본스톡이 완전히 불입된 경우의 이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되며 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회사채에 지불되는 연평균이자율을 한도로(예를 들면 1991년의 9.39%) 稅額控除된다. 그러나 이 규제는 주주가 공급자이거나 구매자일 때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경영주주에 의한 차입금자본과 관계가 있는 한 이자는 회사주주자본의 150%를 초과하는 차입금부분에 대해서는 稅額控除를 하지 않으며 이 규정은 프랑스세법 제145조에서 모회사가 프랑스회사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超過負債 處理方法

초과이자에 대하여 損金不算入한다.

라. 特殊關係者의 範圍 등 適用對象

이자지급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마. 内外國法人의 差別待遇 問題

1990년 수정안(프랑스세법 제212조 제1항을 수정)에 의하면 그 이전에는 프랑스 內國法人은 제외되었으나 1991년부터는 모든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바. 其他

프랑스는 몇몇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대부자와 대출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利子에 대한 稅額控除을 규제한다는 특별규정을 포함하여 체결하였다. 이때 독립기업간관계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配當으로 간주되며 이는 배당으로서 課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가진 조세조약을 프랑스와 체결한 나라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영국 및 미국이 있다.

6. 캐나다

가. 根據 法令 및 制度의 形態

過少資本規制制度는 캐나다의 소득세법 제18(4)조에 규정되어 있다. 캐나다세법 제18(4)조는 과소자본의 판단기준을 自己資本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固定比率型制度를 택하고 있다.

나. 過少資本 基準

특정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支給利子額에 있어서 그 차입금이 자본의 3배를 초과하고 있을 경우 초과액에 상응하는 지급이자액은 損金算入이 否認된다.

제18조(4)는 공제가 가능한 이자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이자율을 초과하여 부과된 이자의 공제는 초과액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손금산입이 부인되며 그 이자액은 제18조(4)의 규정에 의해서만 계산된다.

비거주자가 適正 利子率로 부채를 빌리거나 특정 비거주자가 캐나다 회사에 이자가 없이 빌려준 기금(funds)은 제18조(4)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18조(4)는 연중 내내 항공기나 항공기부품 개발 및 제조의 주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캐나다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特殊關係者의 範圍 등 適用對象

소득세법 제18(4)조에 의하면 特殊關係者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다만, 각종 주식발행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 혹은 그 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의 비거주자로만 언급하고 있다. NRO(nonresident-owned invest corporation)는 소득세법에서 정의된 국내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투자매체가 된다.

라. 特殊關係者의 保證을 통한 債務 處理 與否

소득세법 제18조(6)에 규정되어 있는 antiavoidance rule은 파소자 본제도하의 캐나다회사에 대출해 준 제3자에게 특정 비거주자가 자금을 빌려주었다면 제3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특정 비거주자에게 직접적으

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소자본규제에 해당한다. 이런 종류의 借入金(back-to-back loan)은 過少資本制度에 적용되나 반면에 특정 비거주자가 제3자(대출자)에게 보증 등을 제공하는 경우 캐나다법인인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마. 超過負債處理方法

독립기업간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적정을 초과분은 控除費用에서 부인될 뿐만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이 주주일 경우 자산의 轉用(appropriation of property)으로 간주된다. 주주가 비거주자일 경우 이 전용(appropriation)은 원천세를 목적으로 配當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비거주자 주주와 관련은 있지만 빌려주는 사람이 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배당으로 간주된다.

바. 其他

미국·캐나다 조세조약의 무차별취급 조항은 캐나다가 미국법인과 관련회사나 자회사에게 이자공제와 관련한 캐나다의 國內法の 적용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18조(4)에 의하면 자기자본의 항목은 留保所得(retained earnings), contributed surplus 그리고 拂入資本으로 구성되는데 불입자본금은 특정 비거주자 주주에 의해 소유된 불입자본금만을 가르키며 캐나다 거주자 주주이거나 25%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비관련 주주의 자본금은 損金算入되지 않는다.

拂入資本金은 회계연도 연초나 연말의 一定時點에 특정 비거주자에 의해 소유된 자금으로 재무보고서상의 항목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불입자본금은 회계연도중 일정시점에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Safe haven이 발생하며 국내 자회사를 둔 비거주자의 모회사에

적용된다. 모회사는 모든 이자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회계연도 말에 자회사의 불입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7. 호주

가. 根據 法令

1987년 6월 이전에는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그러나 1987년 4월에 Taxation Laws Amendment Bill(No.4)에서 구체화되었으며 그 해 10월 29일에 의회를 통과하여 Income Tax Assessment Act (ITAA)의 Division 16F(GZA-GZX 제159조)가 구성되었다. ITAA는 3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제159조 GZS와 GZT는 비거주자회사의 利子控除 否認規定이다. 이 제도는 회사, 신탁, 조합, 비거주자지점, 하나 이상의 외국지배법인을 가진 개인에게 적용된다.

나. 過少資本 基準

특정의 비거주자가 호주법인에게 이자부차입금이나 동일한 형태의 융자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부채 對 자본비율이 3 對 1(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은 6 對 1)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無利子借入金은 외국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1991년 1월 8일부터 短期去來借入金은 대상에서 除外되었다.

다. 超過負債 處理方法

과소자본 초과부분에 상응하는 支給利子は 損金算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주세법은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지 않고 다만 손금산입에서 제외할 뿐이다. 단, 2년 이내에 상환되는 주식은 原則的

으로 자기자본에서 제외되며, 각종 투자, 법인, 신탁, 조합 등을 통한 차입금에도 적용된다.

라. 特殊關係者의 範圍 등 適用對象

특수관계자라는 直接的인 언급은 없고 다만, 호주법인의 주식·지배권을 직·간접적으로 15% 이상 소유하거나 혹은 배당을 15% 이상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의 비거주자라면 언급하고 있다.

마. 特殊關係者의 保證을 통한 債務 處理 與否

外國母會社 등에 의한 보증차입은 그것이 적정한 것인 한 손금산입 불인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바. 内外國法人의 差別待遇 問題

호주의 과소자본규제제도는 外國支配法人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내기업간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 其他

과소자본제도는 국외 차입금은 外國支配法人 (foreign controller) 과 관련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3자에 의한 無利子借入金이나 독립기업간원칙에 해당하는 차입금은 除外된다.

1987년 7월부터 외국지배법인과 관련회사가 거주자지주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였을 때 동국 은행 내의 지주회사 자본은 外國資本으로 간주되며 동 은행을 전부 소유할 필요가 없다.

1987년 1월부터 호주 원천세가 면제(exemption)되는 사채는 과소자

본에서 控除된다. 또한 외국지배법인이 발행된 지 30일 이내에 사채를 매각하고 외국지배법인에게 사채이자 지불되었다면 외국자본계산에서 사채는 제외된다.

8. 스위스

가. 根據法令

스위스의 租稅構造는 연방세법에 추가로 26개주의 세법을 근거로 하며 이는 연방원천세법과 연방직접소득세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스위스 세법은 몇 개의 州法을 제외하고는 過少資本制度和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는 특별규정은 없다.

연방원천세법과 연방직접소득세법에 언급이 없어도 높은 차입금 비율을 막기 위해 스위스 법정은 직접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며 스위스 당국은 租稅回避 概念을 설정하여 현실적으로 과소자본세제를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법적 정의로서 조세회피는 제3자에 의해 지켜져 온 법적 관행에 예외적 또는 이례적이며 사업환경에 적합하지도 않으며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며 거래가 완전하게 성립되었을 때 租稅節減效果를 낳는 행위라고 스위스 과세당국은 보고 있다.

나. 制度의 形態

스위스는 獨立企業間原則型制度를 기초로 하여 고정비율형을 때때로 취한다. 그러나 고정비율형제도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다. 過少資本基準

과소자본에 관해 특정의 特殊關係者(원칙적으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당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비율이 투자회사는 6對 1, 부동산회사는 4對 1, 공업·상업회사는 3對 1, 또는 2對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차입금은 출자로 되고 그 지급이자는 配當으로 간주한다. 이 간주배당은 35%의 원천세가 과세되나 많은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輕減되고 있다.

1990년 10월 의회는 연방직접세법을 개정하였으며 여기에 1995년 1월부터 시행되는 過少資本制度和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금은 소득과 순자산세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으로 간주되며 특별규정하에서 부동산회사의 주식(equity)은 총자산의 3분의 1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채가 총자산의 80% 수준으로 규정되었던 원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개정된 것이다.

라. 保證債務

연방조세국의 관행은 제3자 부채가 차용인과 특수 관련자로부터 보증된 부채일 경우 資本(equity)으로 간주한다.

마. 特殊關係者の 範圍 등 適用對象

原則적으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特殊關係者로 정의하고 있다.

바. 立證責任

納稅者는 제3자로부터의 용자를 독립기업원칙 판단기준하에서 조달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其他

租稅條約의 惡用 防止를 위해 1962년에 법률화된 스위스연방의 조약 이행지침은 과소자본제도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조약의 혜택이 자본의 6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가진 법에게는 향유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의 조세조약은 1962년의 범 조항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 조세조약에 적용된 過少資本比率은 10對 1의 비율로 규정된 벨기에, 독일의 조세조약을 제외하고는 6對 1로 규정되어 있다.

9. 홍콩

가. 根據法令 및 制度의 形態

홍콩세법은 利子費用 控除나 홍콩회사가 과소자본제도하에서 負債를 자본으로 간주하는 규제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홍콩 IRO(Hong Kong's Inland revenue Ordinance)의 antiavoidance 규정은 과소자본 회사의 이자공제규제조치를 정부당국이 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20조는 거주자와 공동지배하는 사업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이 獨立企業間原則보다 낮은 과세이윤을 가지는 경우에 IRD(Inland Revenue department)가 과세가능한 비거주자의 利潤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제61조는 人爲去來(artificial transaction)에 관한 규정으로, 특수관계자에 의해 대출된 홍콩회사의 부채는 독립기업 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의한 人爲去來로 간주된다. 또한 제 61조(a)는 세제상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어떤 세 제혜택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규정하의 過多借入金은 規制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 其他

迂廻借入(back-to-back loan)의 경우와 금융기관의 적립금은 국내 회사가 IRO 제2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利子控除를 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용하는데 이 경우 은행부채의 원금과 이자는 다른 적립금(deposits) 자산에 의해 보증되어야 한다.

국내세법은 외국 모회사와 다른 관련회사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공제에 관해 엄한 조건을 세우고 있다. 차용회사의 부채가 債券發行에 의한 융자일 때와 차용회사에 지급한 이자가 채권발행 지급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 그리고 차용회사의 이자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될 경우에만 控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자비용은 그 기금이 국내에서 과세 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에만 利益課稅에 대해 控除한다. 예를 들어 주식구매를 위해 융자받은 부채에 대한 이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배당소득은 국내 이익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은 非居住者의 지급이자에 대해 원천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홍콩으로부터 상환되는 이자에 대한 課稅費用은 없다.

10. 外國의 過少資本規制制度 運營現況 比較

過少資本規制制度는 크게 고정비율형과 독립기업간원칙형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접근방법인 獨立企業間原則型(남용방지형 : Antiabuse Approach)은 비정상적인 용자가 있는 경우 조세회피방지규정, 남용방지규정 혹은 실질과세의 원칙(Substance over Form)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용자를 숨겨진 자본 혹은 그 지급이자를 利益配當의 假裝으로 인식한다. 이때 판단기준은 독립기업간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으며 過大利子는 배당으로 보아 과세된다. 이는 이전가격제와 유사하나 이전가격제에 이자율의 高低에 의해 규제하는 데 반해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고 주로 미국(IRC 제385조), 영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固定比率型(Fixed Ratio Approach)은 특수관계회사의 負債(차입금 등)가 자본지분의 一定比率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응하는 차입금 등의 지급이자의 손금성을 부인할 뿐이고, 그것을 配當으로 간주한다고는 규정하지 않으며 미국(IRC 제163조(j)),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과소자본의 판단기준으로서 特殊關係者의 차입금과 출자자본지분의 비율이 3배인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미국과 프랑스는 1.5배를 기준으로 하여 보다 制限的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特殊關係者의 지분참여율도 일반적으로 50%를 기준으로 하나 캐나다, 호주, 독일 등에서는 다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 系列企業의 保證을 통한 채무관계도 전체 채무규모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소자본규제제도를 두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소자본규제제도를 도입한 거의 모든 나라가 이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내자본의 국내법인에 대하여는 규제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表 IV - 1〉 外國의 過少資本規制制度 運營現況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프 랑 스	캐 나 다	호 주	스 위 스
제도의 형태	고정비율형	독립기업간 원칙형	원칙:고정비율형 예외:독립기업간 원칙형 ⁴⁾	고정비율형	고정비율형	고정비율형	고정비율형 ⁸⁾ 예외:독립기업간 원칙형	독립기업간 원칙형
과소자본 기준 (비율) ¹³⁾	1.5배 ¹⁰⁾	1~6배 ^{9), 10)}	3배 ³⁾	3배 ^{5), 12)}	1.5배 ¹⁰⁾	3배	3배 ⁶⁾	2~6배 ²⁾
특수관계자범위 (지분)	50%	75% ¹¹⁾	25%	50%	50%	25%	15%	50%
차입금범위 (단기 차입금포함여부)			제외				제외	
보증을 통한 채무 포함 여부	포함	포함		제외		제외	원칙적으로 포함 ⁷⁾	포함
내·외국법인 차별대우 여부	규정상:비차별 실질상:주대상은 외국계기업	조세조약과 이전 가격세제에 의한 과세이므로 외국법인만 해당	규정상:비차별 실질상:주대상은 외국계기업	규정상:비차별 실질상:주대상은 외국계기업	비차별	비거주자만 대상	비거주자만 대상	
근거법령 ¹⁾	IRC 제163조(j): 비과세 특수관계 자에 대한 손금산입제한규정	ICTA 제770~773조:이전가격세 제 (구체적 간주 배당 규정 없음)	KSTG 제8a조: 과소자본세제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13	GTC 제39조 1.3항 제212조	소득세법 제18(4)조	TLAB(No.4), Division 16F, GZA~GZX	

註: 1) IRC: Internal Revenue Code, GTC: General Tax Code, TLAB: Taxation Law Amendment Bill, ITC: Income Tax Code, KSTG: Körperschaftsteuergesetz.

- 2)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비율이 공업·상업회사 2배 또는 3배, 부동산회사 4배, 투자회사 6배를 초과하는 경우.
- 3) 예외로서 이익참가형 차입금에 대하여는 0.5배 그리고 지주회사(Holding Company)에 대하여는 9~18배까지 손금산입됨.
- 4) 회사는 독립기업간원칙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음.
- 5) 내국법인은 이 3배수 대신에 동급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규모가 유사한 내국법인의 총부채·자본비율에 비추어 타당한 배수를 이용할 수 있음.
- 6)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6배
- 7) 보증차입이 적정한 것인 한 손금산입 불인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8) 차입금이 독립기업간 원칙에 해당하면 제외.
- 9) 지급이자가 지급이자 공제전 이익의 1/3 이하인 경우에는 Safe Harbor 규정을 두어 손금산입.
- 10) 총부채와 총자본비율
- 11) 75%의 지분을 가지는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을 모두 손금불산입.
- 12) 출자자의 차입금과 출자자본비율 및 총부채와 총자본비율 모두.
- 13) 출자자의 차입금과 출자자본비율.

V. OECD모델條約上的 過少資本規制制度 關聯規定

납세자가 자본을 과소화하거나 감춤으로써 얻게 되는 租稅回避效果를 축소시키고 정부의 歲入損失을 막기 위하여 여러 개별국가들의 세법 또는 관행은 특정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이자를 配當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OECD모델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또 많은 개별국가들의 조세조약에도 수용되고 있다.

OECD모델조약상에 過少資本規制制度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없으나 내용상 연관이 되거나 혹은 과소자본규제제도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제9조(계열기업), 제10조와 제11조(배당·이자)와 제23조(이중과세배제방법) 그리고 제24조(무차별조항)가 있다.

제9조(계열기업) 제1항에서는 「계열기업(혹은 특수관계기업)간의 상업상 혹은 금융상의 거래에서 獨立의인 企業間에 인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었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국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국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課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과소자본규제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독립기업간원칙의 범위 내에서 과소자본규제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는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9조에 대한 주석서 제2항 a)와 b)에서는 차입금을 자기자본에 대한 기여(contribution to equity capital)로 간주하는 것을 용인하는 입장이어서 이 경우에는 이자가 配當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9조는 특수관계자간의 이자지불이 稅額算定에 있어서 사

실 과세의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이자율이나 세액공제율이 조정될 수는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자가 배당으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控除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이자를 배당으로 취급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10조와 제11조는 각각 配當과 利子에 관한 규정으로 여기서 정의된 개념이 원천지국의 국내 과소자본 규정하에서 배당으로 간주하는 규정과 상치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또 동 조항에서 제외된 채권은 배당으로 취급되는지의 여부와 법인에 대한 권리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취급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제10조 주식서에 의하면 이윤의 위장배분은 배당으로 간주됨을 알 수 있으며 주식서 제27항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지급배당은 利潤僞裝配分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10조의 규정은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제10조 제3항에서의 配當이라 함은 주식, 순익주식(jouissance shares), 순익권(jouissance rights), 광업주식(mining shares), 발기인주(founders' shares) 또는 기타 비채권 이윤참가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배당법인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주식소득과 동일한 과세상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그 밖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 제3항에서 利子라 함은 채권의 담보유무(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및 채무자 이윤(the debtors profits)에 참여할 권리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특히 정부공채로부터의 소득, 공채, 사채 등의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는 그로부터의 소득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이윤에 참여할 권리수반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원천지국의 국내 過少資本規制制度 規定下에서 배당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주식서는 법인의 이윤능력에 관계된 다른 이자와 채권 참여에 대한 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제11조 주석서에서는 특히 채무자 이윤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채권과 공·사채가 계약상 이자를 위한 부채임이 명백한 경우는 負債로 간주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이윤에 대한 참가권이 기업의 사업활동과 운명을 같이하는 資金의 提供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자금제공은 부채로 볼 수 없으며 제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과소자본규제제도의 적용에는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11조 제6항은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特殊關係로 인하여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은 그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조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하에 각 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3조는 二重課稅防止를 위한 세액공제 조항으로서 원천지국에서 공제되지 않는 이자 또는 배당으로의 취급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지국에서 이자 또는 배당으로 취급되는지를 규정하기 때문에 양자간의 조약의 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대가가 이자 또는 배당인가에 따라 원천지국에서의 源泉稅率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3조는 이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지침을 주지 않고 있으며 개별조약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즉 제23조는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고 다만 동조의 주석서 제49~54항에서 일방이든 양자간이든 一方 締約國이 규제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4조(무차별조항 : Non Discrimination Clause) 제1항에서는 일방 계약국의 국민은 타방 계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同 他方國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여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조 제4항에서는 제9조 제1항, 제11조 제6항, 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여서 제9조 제1항을 이자를 대상으로 간주하는 過少資本規制制度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 24조의 무차별조항은 독립기업간원칙형의 과소자본규제제도의 경우에는 例外가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모델조약 제24조에 대한 주석서 제56항의 단서에서는 비거주자인 자본대여자에게만 과소자본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24조 제5항은 일방 체약국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1인 또는 2인 이상의 타방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直·間接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당해 기업은 그 일방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한 의무와 상이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조세 또는 그와 관련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동일한 환경하에서 이자가 非居住者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 控除된다면 비거주자에 의해 지배되는 비거주자주주회사에게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違背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국적기업 거래에서 일방국이 利子對價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반면 타방국에서는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면 이에 따른 문제는 제25조의 相互合意節次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Ⅵ. 國內企業 및 外國人投資企業의 借入金 運用現況

1. 國內企業의 借入金 運用現況

가. 國內企業의 負債比率

국내기업의 負債比率를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表 VI-1>과 같다.

<表 VI-1> 國內製造業의 負債比率

(單位: %)

	제 조 업	제조업(대기업)	제조업(중기업)
1983	368.00	372.01	343.63
1984	336.18	323.28	387.60
1985	349.03	337.41	393.05
1986	353.13	345.35	379.49
1987	342.21	334.59	366.68
1988	292.20	282.14	323.74
1989	251.05	239.98	286.12
1990	285.57	271.47	335.41
1991	310.25	295.01	365.35
1992	334.30	300.74	451.79
1993	305.38	273.85	415.82
1994	309.06	282.85	392.45

註: 1. 제조업은 1982년 12월 31일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1992년 7월 21일 개정)에 따라 대기업과 중기업으로 분류하였음.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상시종업원수 20인 이하 및 매출액 5억원 미만 업체임.

2.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 100.

資料: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 각호.

우리나라의 제조업분야 국내기업의 부채비율은 1983년 이후로 1987년까지 350% 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는 300% 이하로 떨어졌다. 그 뒤 1991년부터 300% 이상으로 늘어났으나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과 중기업을 비교하여 보면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중기업보다 낮고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벌어져가고 있다.

기업의 安定性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을 주요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1994년말 현재 전년도의 24.67%에

〈表 VI-2〉 國家別 製造業의 自己資本比率 및 負債比率의 比較

(單位: %)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자기자본 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	부채비율
1983	21.37	368.00	49.01	104.03	23.6	306.4	36.57	173.47
1984	22.93	336.18	47.60	110.09	24.4	293.9	39.30	154.48
1985	22.27	349.03	45.25	121.01	25.7	268.8	42.28	136.51
1986	22.07	353.13	43.99	127.30	27.1	268.5	44.22	126.12
1987	22.61	342.13	42.89	133.13	28.2	254.6	47.46	110.70
1988	25.50	342.21	41.98	138.20	29.1	243.6	47.97	108.48
1989	28.49	251.05	40.53	146.75	30.3	230.4	52.36	90.98
1990	25.94	285.57	40.20	148.74	30.6	227.1	54.53	83.39
1991	24.38	310.25	40.44	147.28	31.2	221.0	50.53	97.90
1992	23.02	334.30	37.28	168.18	31.6	216.4	51.82	92.99
1993	24.67	305.38	36.43	174.50	32.0	212.8	53.21	87.95
1994	24.45	309.06				209.3		

資料: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 각호.

비해 약간 하락한 24.45%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미국의 36.4%(1993년), 일본의 32.0%(1993년), 대만의 53.2%(1993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국내 제조업의 負債比率은 <表 V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기준 305.38%로서 借入金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보면 미국(1993년, 174.50%), 대만(1993년, 87.95%) 등 주요 외국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것이며, 부채

<表 VI-3> 業種別 負債比率

(單位: %)

	원양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호텔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리스업	사업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1983	3736.59	278.01	368.00	176.52	526.30	526.94		548.02		274.46	98.35
1984	1394.74	164.27	336.18	178.63	527.03	489.74	102.65	643.16		188.07	59.76
1985	1205.21	205.99	349.03	189.57	559.18	547.21	191.26	821.44	1544.24		56.68
1986	1010.35	207.54	353.13	172.27	590.44	396.38	114.91	3078.56	1746.23		55.23
1987	606.74	224.11	342.21	143.06	711.43	305.95	115.20	1532.48	1790.77		78.32
1988	362.72	219.43	292.20	105.76	607.79	273.88	144.01	984.73	1706.43		89.50
1989	347.37	313.51	251.05	90.06	431.85	260.73	196.66	643.08	1430.10		108.07
1990	576.30	229.05	285.57	87.28	517.89	275.80	198.61	672.32	1059.41		107.77
1991	858.99	259.98	310.25	95.64	539.89	354.23	199.50	354.09	1148.79	278.67	98.56
1992	938.66	290.33	334.30	109.34	522.88	415.16	227.87	343.74	1267.30	269.33	106.91
1993	548.28	280.99	305.38	119.52	480.72	409.33	236.43	324.13	1342.46	342.71	122.00
1994	608.38	307.26	309.06	114.44	484.11	416.11	219.07	301.30	1308.36	436.49	342.61

註: 1. 1991년에 개정된 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별 구분이며 1983~84년의 전기가스업은 전기업, 도소매업은 도소매 및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은 운수창고업, 사업서비스업은 부동산 및 용역업, 기타서비스업은 사회서비스업으로 분류됨. 또한 1985~90년에는 금융리스업은 금융업, 기타서비스업은 서비스업,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됨.

資料: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 각호.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1994년, 209.3%)의 1.4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財務構造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과거 정책금융의 지원으로 금리보조적인 차입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金利規制로 은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아 은행차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고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던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을 業種別로 살펴보면 1994년도의 제조업의 경우는 경기호조에 따른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設備投資 확대에 따른 借入金規模의 증가 및 활발한 영업활동에 따른 부채가 증가한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전기가스업과 호텔업의 업종에서 자기자본의 비율의 다소 늘어나 부채감소 현상을 보였고 건설업의 경우는 1992년과 1993년에는 꾸준한 자기자본의 증가로 재무구조가 전반적으로 改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4년에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상, 음향, 통신장비 업종의 매출증가로 운수창고통신업의 自己資本比率이 다소 개선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나. 國內企業의 關係會社間 負債比率

국내기업의 關係會社間 부채비율에 관한 자료는 상장사가 부채에 관한 자료를 상장회사협의회에 제출할 때 관계회사로부터의 부채를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회사협의회가 집계한 관계회사로부터의 부채규모는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자료의 사용에 다소 문제가 있다. 실제로 상장회사협의회가 제공한 자료 상에는 국내기업의 관계회사로부터의 負債比率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나타나 대부분의 기업이 5% 미만을 보였다. 金裕燦·安鍾錫(1995)에서는 이에 대한 차선택으로 일부 회계법인의 감사자료를 이용하여 국내기업의 자기자본 총액과 관계회사간 부채비율에 대한 대강의 규모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에 추가

하여 국내기업의 자기자본총액에서 관계회사의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하여 국내기업의 관계회사 출자지분과 관계회사 부채비율을 조사해 보았다. 이에 앞서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자료(회계감사자료)를 제조업과 전 산업에 대해 <表 VI-4>와 같이 비교·검토해 보았다. 총자산·자본 그리고 매출액 등 대차대조표상에서 標本集團이 모집단보다 규모가 큰 기업들임을 알 수 있으나 부채비율(부채총계/총자본)은 303.4%로 제조업(302.5%)과 전 산업(308.1%)과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비록 통계자료가 소수의 표본에 의한 것이지만 관계회시간 부채비율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 <表 VI-5>~<表 VI-7>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表 VI-4> 標本集團과 製造業全體 및 全産業分野의 財務構造比較

(單位: 백만원)

	표본집단(106개)	제조업(13,903개)	전 산업 (31,348개)
총자산	664,174	22,341	16,966
부채총계	499,540	16,791	12,809
유동부채	302,754	10,461	8,025
고정부채	196,786	6,330	4,784
총자본	164,634	5,550	4,157
부채총계/총자본(%)	303.4	302.5	308.1
매출액	899,672	20,038	16,962

資料: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
회계법인, 『회계감사보고서』, 1994.

<表 VI-5>에서는 우선 관계회사 부채의 자기자본 총액에 대한 비율을 검토하였다. 표본집단(106개) 중 누락된 수치가 있는 기업은 제외하고 81개 업체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중 자본금이 0보다 작은 11개 업체와 부채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업체(20배 이상 4개 업체)를 제외한 66개 기업을 최종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負債比率은 <表 VI-5>에 나타난 바와 같다.

〈表 VI-5〉 國內企業의 關係・關聯會社間 負債比率(1994年)

(單位: %)

부채/자본	관계·관련회사 부채/자본
409.19	35.67

註: 1. 관계회사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 동일한 주주가 두 개 이상의 기업의 지분을 각각 50% 이상씩 보유한 경우,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관련회사는 관계회사 이외의 지분소유관계가 있는 기업임.
2. 자본은 자기자본임.

資料: 金裕燦·安鍾錫, 『過少資本規制制度의 導入方案』, 未發刊資料, 韓國租稅研究院, 1995. 8.

〈表 VI-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본집단의 국내기업의 關係・關聯會社間의 負債/資本比率 平均은 409.19%로 국내기업 전체평균보다 높다. 이 표본집단의 자기자본에 대한 관계·관련회사 부채의 비율은 35.67%이다. 관계·관련회사 부채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별로 업체구성을 보면 〈表 VI-6〉과 같다.

〈表 VI-6〉 關係・關聯會社 負債/資本比率別 構成

(單位: %, 개)

관계·관련회사 부채/자본비율	업 체 수	구 성 비
0	15	22.7
0 ~ 25	39	59.1
25 ~ 50	4	6.1
50 ~ 75	3	4.5
75 ~ 100	2	3.0
100 ~ 150	2	3.0
150 이상	1	1.5
전 체	66	100.0

資料: 金裕燦·安鍾錫, 『過少資本規制制度의 導入方案』, 未發刊資料, 韓國租稅研究院, 1995. 8.

전체 66개 업체 중 22.7%인 15개 업체는 관계 및 관련회사 부채가 없으며, 59.1%인 39개 업체의 關係·關聯會社 負債는 자기자본의 25% 이하이다. 관계·관련회사 부채가 자기자본의 100%를 능가하는 업체수는 4.5%인 3개 업체이다. 관계·관련회사 부채가 있는 51개 업체의 평균 부채/자본비율은 431.02%이며, 관계·관련회사 부채/자본비율은 46.16%이다.

〈表 VI-7〉 關係·關聯會社 負債가 있는 企業의 負債/資本比率 平均

(單位: %)

부채/자본	관계·관련회사 부채/자본 (A)
431.02	46.16

資料: 金裕燦·安鍾錫, 『過少資本規制制度의 導入方案』, 未發刊資料, 韓國租稅研究院, 1995. 8.

위의 〈表 VI-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관계·관련회사 부채는 總負債의 10% 수준으로 비교적 낮고 관계·관련회사의 부채가 없는 기업을 제외한 51개 업체만 보더라도 그 중 76%인 39개 업체의 관계·관련회사 부채/자기자본비율이 25% 미만이다. 그러나 위의 〈表 VI-7〉에서는 關係·關聯會社 負債를 총 자본과 비교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관계회사 부채와 관계회사의 출자자본의 관계를 추론하여 보기는 무리이다. 위의 관계·관련회사 부채를 구한 회계법인의 감사자료에서는 관계·관련회사의 출자지분 관계를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관계·관련회사의 출자지분을 추정해 보았다. 〈表 VI-4〉에서 사용한 표본집단기업 106개 중 상장된 기업수는 32개였다. 상장기업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이 32개 상장기업의 관계·관련회사의 지분을 각각 계산하여 평균을 내보면 〈表 VI-8〉과 같았다.

〈表 VI-8〉 支配株主 出資持分 平均과 關係・關聯會社 負債 및
關係・關聯會社 出資持分 比率(1994年)

(單位: 조원, %)

관계·관련회사 출자지분 평균(B)	〈表 VI-7〉의 A / 〈表 VI-8〉의 B
28.45	162.25

資料: 고려증권, 『上場企業分析』, 1995년 봄호.

위의 방법을 통하여 추정된 우리나라 기업의 관계·관련회사 부채와 관계·관련회사 지분의 비율은 162.25%이다²⁷⁾.

다. 關係企業間 保證債務 現況

1995년 4월 1일 현재 30대 大規模企業集團의 系列社間 전체 債務保證金額은 82조 1천억원으로 이는 전년의 110조 7천억원에 비해 28조 6천억원이 감소한 것이며 자기자본 대비 채무 보증비율도 전년의 258.1%에서 161.9%로 감소하였다. 그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8조 3천억원으로 전년도 72.5%에 비해 24조 2천억원이 감소하였으며 自己資本 對比 制限對象 債務保證比率도 95.2%로 전년대비 73.9% 감소하였다.

27) 그러나 여기서 추정된 우리나라 기업의 관계·관련회사 부채와 관계·관련회사 지분비율은 여러 가지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그 추정치에 대하여 큰 신뢰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특히 〈表 VI-8〉의 계산은 지분율 20% 이상인 관계회사와 관계회사 이외에 지분소유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기업을 의미하는 관련회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관계회사의 부채비율보다 과다하게 부채비율이 집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료로 이용한 회계법인의 감사자료에는 관계·관련회사의 부채관계를 보고하는 항목은 있으나 이 항목이 의무적인 보고 사항이 아니므로 보고하지 않은 회사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부채자본비율이 과소집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表 VI-9〉 30大 大規模企業集團 債務保證現況

(單位: 조원, %)

	자기자본 (A)	채무보증금액			자기자본 비율	
		제한대상(B)	제외대상(C)	계(D)	C/A	D/A
1993. 4. 1. 기준	35.2	120.6	44.9	165.5	342.4	469.8
1994. 4. 1. 기준	42.8	72.5	38.2	110.7	169.1	258.1
1995. 4. 1. 기준	50.7	48.3	33.8	82.1	95.2	161.9

資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1995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분석」, 보도자료, 1995. 7.

2. 外國人投資企業의 負債/資本比率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負債/資本比率는 국내기업 전체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1991년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자본비율은 653%로 국내기업(310%)의 2배를 능가하였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자본비율은 외국인투자비율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외국인투자기업은 投資危險 回避 및 租稅負擔 節減을 위하여 차입금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신용보증 제한, 부동산 등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현지 금융에 애로가 있으며,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海外借入 規制로 인하여 해외차입에도 제한이 있어 부채/자본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金裕燦·安鍾錫(1995)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업체들의 국내 및 해외차입을 억제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보증기금이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경우보다 엄격한 信用評價를 하는 관행이 있어서 실제로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신용보증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 둘째,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는 「外國人土地取得管理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부동산취득이 자유롭지 못하여 '담보대출'을 관행으로 하는 국내 금

〈表 VI - 10〉 우리나라 外國人投資企業의 負債/資本比率

(單位: 개, 백만원, %)

	외국인투자비율	업체수	총자산	자 본	부채/자본비율
1988	(전 체)	1,115	24,478,658	3,939,559	521.3490
	70% 초과	253	2,143,221	642,478	233.5867
	40~70%	566	7,849,446	1,622,221	383.8703
	0~40%	296	4,485,991	1,674,900	764.8869
1989	(전 체)	1,247	29,389,856	4,778,016	515.1059
	70% 초과	280	2,015,135	768,603	162.1815
	40~70%	632	9,637,981	1,967,708	389.8075
	0~40%	335	17,736,740	2,041,705	768.7220
1990	(전 체)	1,332	39,126,589	5,529,070	607.6523
	70% 초과	293	2,471,420	982,813	151.4639
	40~70%	659	13,064,649	2,108,284	519.6816
	0~40%	380	23,590,520	2,437,973	867.6284
1991	(전 체)	1,320	49,221,225	6,553,480	653.3692
	70% 초과	277	3,006,300	1,131,254	165.7493
	40~70%	668	15,929,197	2,439,818	552.8846
	0~40%	375	30,285,728	2,962,408	922.3348

資料: 金裕燦·安鍾錫, 『過少資本規制制度의 導入方案』, 未發刊資料, 韓國租稅研究院, 1995. 8.

음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애로가 있다. ‘보증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擔保不足이 문제가 된다. 셋째, 일부 정책금융(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공업발전기금)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外國換管理規定」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의 지급보증하에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 차입금의 변제를 위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모기업의 支給保證을 담보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一般的인 관행이다. 다섯째,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 원자재·시설재 도입자금과 금융기관 부채 상환지금융 短期海外借入은 외국인투자금액의 75% 이내에서, 그리고 시설재 도입을 위

한 장기 상업차관은 1995년부터 외국인투자금액의 100% 이내에서 許容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및 해외차입을 억제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自己資本比率에 비례하도록 허용하는 외자도입법상의 규정을 언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관계회사와의 채무거래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나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제도상 또는 관행상 제약들로 인하여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海外 關係會社로부터의 借入金 規模는 작을 것으로 추측된다.

Ⅶ. 우리나라의 現行 過少資本規制制度의 評價 및 改善方案

1. 長期的인 政策方向에 대한 評價 및 改善方案

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할 때 실제로 資本出資에 해당하나 이를 借入金의 형태로 제공하려는 유인동기가 생기는 이유 중 중요한 하나는 自己資本과 他人資本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자기자본비용에 비하여 타인자본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으로써 기업은 타인자본을 더 선호하게 되고 자본출자를 차입금으로 假裝함으로써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을 동등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될 것이다.

自己資本과 他人資本의 과세상의 동등한 취급은 두 가지 차원의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우선 法人稅法에서 규정된 차입금에 대한 損金算入規定을 폐지하거나 배당에 대하여도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이 국내법상의 접근방법이 될 것이고 국가간의 조세조약에서 間接外國稅額控除制度를 채택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들의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먼저 他人資本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폐지하는 것은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재무구조를 惡化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급격한 稅負擔 增加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두번째로 배당에 대하여도 지급이자와 마찬가지로 손금산입을 허용해주는 방안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무

리한 배당을 실시하므로 재무구조가 오히려 더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²⁸⁾.

세번째로 국가간의 조세조약에서 間接外國稅額控除制度를 채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間接外國稅額控除制度下에서는 자회사 차원의 법인세부담을 외국의 모회사의 세부담에서 세액공제해주는 것이 허용되는데 일반적인 외국세액공제제도가 자회사의 법인세부담을 제외한 모회사의 이윤송금시 배당에 대한 원천소득세부담만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에서 진일보된 제도이다²⁹⁾. 자회사의 법인세부담이 세액공제되는 까닭에 이 제도하에서는 자기자본에 대한 자회사와 모회사의 세부담합계가 타인자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³⁰⁾. 다만 이 경우에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法人稅負擔과 源泉所得稅負擔을 충분히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 정도인 완전세액공제 가능상태(net credit position)에 있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는 고세율국가에서 저세율국가로 투자자본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는 조건이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에는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는 위의 두 가지 방법과는 달리 기업의 급격한 세부담증가나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의 위험이 없는 방법이 될 것이다.

28) 과거 일본이 이 방안을 채택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가 오히려 더 취약하게 되었던 경험 이 있다(孫元翼, 『企業의 財務構造와 稅制』, 未發刊資料, 韓國租稅研究院, 1996. 3, p. 79).

29) 외국과의 조세조약의 체결이나 개정시 우리나라 자본이 해외에 투자된 경우에 대하여 간접외국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자본에 대하여 외국이 간접외국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경제적 발전단계가 큰 차이가 없는 동등한 국가간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0) 제 II 장 제 2 절 '나. 資本過少化를 통한 租稅回避行爲에 대한 規制'를 참고할 것.

2. 中 · 短期的인 政策方向에 대한 評價 및 改善方案

가. 外國資本 流入에 미치는 影響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실제적으로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자금을 借入金의 형태로 사용하면서 국내에서 과세되어야 할 稅源을 국외로 流出시키는 현상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過少資本規制制度는 필요한 제도이다. 다만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야기될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서 보완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고려하여야 할 점은 과소자본규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外國人投資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과소자본규제제도로서 固定比率型制度에다 독립기업간원칙형제도를 가미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는 독립기업간원칙형제도를 선택하느냐 고정비율형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外國人投資企業에 미치는 규제효과 및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독립기업간원칙형제도는 외국인기업이 해외의 母企業으로부터 借入金を 도입하는 관계에서 그 조건이 독립된 기업간의 조건과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비용을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다른 한편 固定比率型制度는 차입금의 자본에 대한 一定倍數를 기준으로 하여 過多借入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독립기업간원칙형제도보다 簡便하고 행정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하며 外國企業의 過多借入에 대한 규제효과도 확실하다.

그러나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제도는 외국기업의 과다차입에 대한 규제로서 머물러야 하며 규제효과가 지나쳐서 외국자본의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기업의 과다차입에 대한 규제효과는 유지하되 외국자본의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비율형 과소자본규제제도를

시행하되 적용의 기준이 되는 출자자본과 차입금의 배수를 적절히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과소자본규제제도가 적용하는 3배數 비율은 外國人投資에 큰 제약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Ⅳ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의 관계회사로부터의 負債比率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³¹⁾.

오히려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上의 과소자본규제제도보다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다차입에 대한 損金不算入制度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제Ⅵ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平均負債 資本比率은 1991년 기준 653%로서 같은 해 국내기업의 평균인 310%의 두 배를 능가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나. 國內企業活動에 미치는 影響

과소자본규제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外國人投資企業의 과소자본을 규제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다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독립기업간 원칙형제도를 적용하거나 그에 수반하는 행정비용을 고려하여 固定比率型制度를 채택하되 국내 기업의 경제활동(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도 이를 따르고 있다. 반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조달 행태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행태에도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고정비율형제도를 채택하고 손금불산입 여부의 판정을 위한 負債·資本比率, 부채의 범위 등을 결정하여 이를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히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31) 다른 한편 OECD가입과 더불어 외환규제가 완화된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관계 회사로부터 부채비용은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고 이 경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급격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중·단기적으로 3배수 비율로 인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은 무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업의 현황과 정책목표가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上的 과소자본규제와는 별도로 국내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자본금의 一定倍數 이상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규제하고 대기업 집단의 債務保證에도 제한을 가하려는 정책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上的 外國法人에 적용되는 과소자본규제제도와 國內企業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차입금 규제제도를 외국계 기업과 국내기업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단일법 체계하에 두는 방향의 법 개정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제도는 국내·외기업의 차입금 과다사용에 대하여 同一한 法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내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다차입금의 損金不算入制度가 국내기업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기업의 관계회사로부터의 부채비율(관계회사 부채/관계회사 출자지분)도 그다지 높지 않다(〈表 VI-8〉 참조). 그러나 국내기업의 관계회사간 保證을 통한 차입금 이용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하여 훨씬 용이하므로 보증채무를 포함한 借入金規模는 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하여 훨씬 높을 수 있다. 1995년 4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債務保證現況을 보면 총 82조 1천억원으로서 자기자본의 161.9%가 된다. 이는 총자기자본에 대한 비율이므로 관계회사가 출자한 자본지분에 대한 부채비율은 〈表 VI-8〉에서 추정한 관계 관련회사로부터 출자지분 평균 28.45%를 기준으로 본다면 569.07%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다음 표에서는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上的 과소자본 판정기준(관계회사부채/관계회사출자지분)과 앞으로 法人稅法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기업의 財務構造改善을 위한 차입금 손금불산입 기준(총부채/총자본)에 비추어 보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추정 부채비율을 볼 수 있다.

〈表 VII-1〉 國內企業과 外國人 投資企業의 推定 負債比率

(單位: %)

	국 내 기 업	외국인투자기업
관계회사 부채/관계회사 출자지분		
부채비율	162.25 ¹⁾	—
보증채무	569.07 ²⁾	—
계	731.32	—
총부채/총자본		
부채비율	308.1 ³⁾	653.37 ⁵⁾
보증채무	161.9 ⁴⁾	—
계	470.0	—

註: 1) 관계·관련회사 출자지분은 1995년 기준이며 관계·관련회사 부채는 1994년 기준의 표본 추출된 기업의 평균

2) 1995년 기준

3) 1993년 기준

4) 1995년 기준

5) 1991년 기준

따라서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上의 과소자본 판정기준을 현재의 3배의 負債比率로서 이를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모두 적용할 경우 상당수의 국내 기업이 부채를 갑작스럽게 줄이거나 증가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 法人稅法上의 차입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판정기준을 3배율로 정하는 경우에도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모두에게 활동에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 대출이 大規模 企業集團에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93년 4월에 도입되었던 系列社間 債務保證 制限制度는 당시 평균 469.8%인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채무보증비율은 지난 1995년 4월 1일 현재 161.9%로 낮아져서 당초 제도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대부분 대기업들은 1998년 3월 말까지 債務保證을 100%대로 낮추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2002년 3월 말까지의 정책목표인 0%의 채무보증은 系列

社間 保證을 전혀 하지말라는 것이어서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5년 내에 채무보증을 전액 회수할 경우 企業의 立場에서는 상당부분의 기존 차입금을 償還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며 수출금융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수출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다. 外國企業과 國內企業에 대한 衡平性 問題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상에는 과소자본규제제도를 外國企業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OECD모델조약에 비추어 볼 때 固定比率型形態를 취하는 과소자본규제제도는 용인되지 않으며 독립기업간원칙형제도를 시행할 때는 그 적용을 외국기업에 제한시키지 않을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OECD 국가들이 OECD모델조약의 내용과 원칙적으로 합치되지 않는 내용의 過少資本規制制度를 가지고 있다. 미국·일본·독일 등은 법규정상 규제대상을 외국계 기업만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주로 외국계기업이 규제대상이 되도록 입법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다.

OECD국가들이 모두 OECD모델조약의 입장과 일치하는 국내 과소자본규제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내·외국인에 대하여 差別的 適用을 규정하는 過少資本規制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오히려 국내기업에 대한 과소자본규제제도가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보다 앞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상의 과소자본규제제도를 내·외국인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법인의 채무규모를 資本金의 3배 수준으로 제한하고 대기업 집단간의 債務保證 限度를 대폭 축소시켜 나가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상의 과소자본규제제도의 적용대상을 내·외국인으로 확대하여도 추가적으로 國內企業에 대하여 가하는 규제효과는 미약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내기업의 財務構造 改善을 위한 과소자본규제와 외국계기업의 자본과소화를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를 두 가지 개별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이를 별개의 두 가지 법체계 속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경우, 즉 국내기업의 재무구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그리고 외국계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에서 다루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상의 過少資本規制制度가 OECD 모델조약 무차별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미국처럼 조세가 감면되는 이자만을 과소자본규제제도의 규제대상으로 하는 등의 입법기술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라. 外國의 過少資本規制制度運營에 대한 對應策

외국의 과소자본규제제도의 운영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우리나라의 過少資本規制制度의 실효성은 현재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關係會社로부터의 부채비율이 높지 않아 한국의 과소자본규제제도 도입이 外國人投資企業의 자금조달 행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 過少資本 基準比率의 適正性

關係會社의 借入金과 출자지분자본의 최소비율이 3배인 것이 국제간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이므로 우리나라의 과소자본규제제도가 이를 택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2배수라면 너무 많은 기업들이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4배수라면 규제폭이 너무 좁아서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3배수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金融業種에 대하여 허용한 6배수 비율도 업종의 특수성에 비추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의 과소자본규제제도는 3배수 비율(예외적으로 금융업에 대

하여는 6배수 비율) 규정을 정하여 놓고도 다른 조항에서 業種別로 差等化된 배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서 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업종별로 차입금 운용의 필요성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하여 차등화된 배수율을 적용한다면 제도의 유효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3배수(예외적으로 금융업에 대하여는 6배수 비율) 비율을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배수 비율을 넘어서는 차입금규모를 가지는 외국계기업이라도 그 조건이 독립기업간 기업의 차입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용을 면제하는 Safe Harbor조항이 우리나라의 과소자본규제제도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3배수 비율을 모든 업종의 외국계기업에 同一하게 적용시키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

금융업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본점과 지점과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있으므로 금융업에 대한 6배수 적용을 본·지점간에까지 확대하는 경우 오히려 과소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결과가 되어 본·지점간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을 법규정에 밝혀야 할 것이다.

3. 細部的인 制度上的 問題點

가. 借入金의 範圍

우리나라는 현행제도에서 차입금을 利子 및 割引料를 발생시키는 부채로서 외상매입금, 단기성 지급어음 등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부채는 除外함으로써 통상적인 공급 및 용역거래에서 발생하는 短期借入金を 제외시켰는데 이는 외국의 제도에 비추어 보아 타당한 것이다.

母會社의 保證을 통한 은행 차입금도 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며 우리나라도 현재 이런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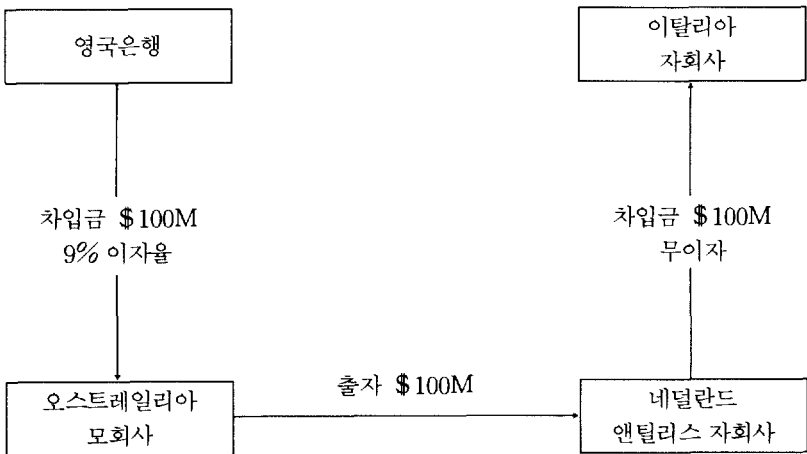
않을 경우에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다.

우리나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과소자본규제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Safe Harbor 조항의 조건의 기준으로서 국외 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당해 내국법인과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고 정하여 規制對象法人과 比較可能法人의 비교척도를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비교가능한 법인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비교척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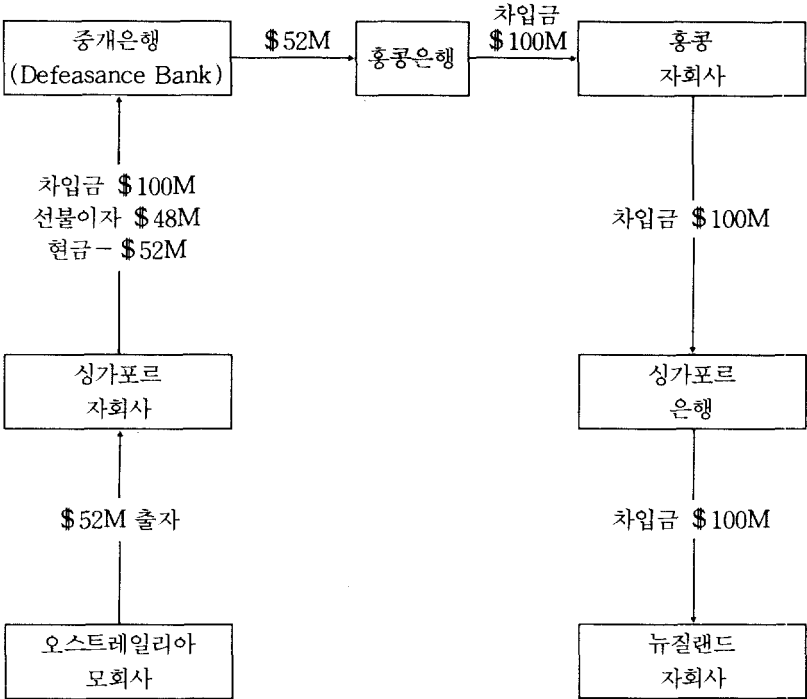
차입금에 해당하는 명목상의 이름을 가지더라도 그 이자의 지급이 이익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요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취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외기업이 子會社에 제공하는 차입금을 여러 단계의 直接出資關係가 없는 거래상대 은행이나 회사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迂迴借入(Back-to-Back-Debt) 이라고 부른다.

[圖 VI-1] 借入金을 假裝한 出資關係(1)



[圖 Ⅶ-2] 借入金을 假裝한 出資關係(2)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 우회차입(Back-to-Back-Debt)의 경우 세무 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해내는 데 많은 시간적·인적 비용이 드는 어려운 작업이나 사실상 관계회사간의 借入金提供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立證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소자본규제제도에에는 이에 해당하는 明示의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의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 제15조에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 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 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거나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 주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었을 때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圖 Ⅶ-2]에서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금의 최종소비자인 뉴질랜드 자회사가 싱가포르 은행으로부터 차입할 때 그 차입조건은 독립기업간 조건에 해당되고 그 차입조건에 대하여 내국법인인 뉴질랜드 자회사와 국외지배주주인 오스트레일리아 모회사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사전결정되지 않더라도 뉴질랜드 자회사의 싱가포르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여부에 대하여는 오스트레일리아 모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에 대한 출자가 우회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엄밀한 의미에서 과소자본규제제도에 규제 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過少資本規制制度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어떤 기업의 차입금 규모를 어떤 時點을 기준으로 파악하느냐 혹은 과세연도의 평균치 개념으로 파악하느냐 하는 것이다.

나. 基準 出資資本金의 範圍

우리나라의 過少資本規制制度는 외국법인의 출자자본금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감한 자본총액에다가 해당 법인의 납입자본 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부에 나타난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借入金의 過多與否를 판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장부에 나타난 자산총액이나 자본총액보다 훨씬 높은 자산가치나 자본가치가 있어서 보다 큰 차입금 규모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規制效果가 지나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國外支配株主의 範圍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상의 과소자본규제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2조에서 그 규제대상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를 출자지

분이 50% 이상인 외국주주로 규정하여 그 범위설정이 다소 제한적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에는 영국이 75% 이상으로서 우리보다 더 제한적이거나 그 외의 국가들은 대부분이 50% 이상이 기준이거나 15~25%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나라보다 國外支配株主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나라가 상당수이다. 물론 추가적으로 출자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실질적 지배기준조항이 있으나 이는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출자지분기준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한 일로 보인다.

또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 제14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가 본점을 뜻하는지 본점의 지배주주를 뜻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 취지로 보아 본점과 본점의 지배주주 모두가 이에 해당되는 것은 자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법규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라. 次期移越 條項

어느 한 과세연도에 손금불산입 판정을 받은 利子支給額을 그 다음 해에 당해 기업의 해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이 대폭 감소되어 損金算入 한도여유액이 생겨날 경우 이월시켜서 損金算入해 줄 것인가에 관한 규정이 우리나라 제도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 獨立企業間 條件의 立證責任

독립기업간원칙에 의거 正常的인 去來로 인정되는 범위의 利子支拂입이 판정될 경우 이는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독립기업간원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이를 立證하는 責任을 어느 쪽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제도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시될 것이다. 다른 한편 이 立證責任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것이 외국의 경우에 일반적이냐 하는 것이다. 이는 移轉價格 課稅制度에서의 독립기업간 조건에 대한 입증책임과 같은 내용으로서 외국의 과세당국과 마찰의 소지가 있다.

VIII. 結論 및 要約

선진국의 과소자본규제제도 도입과 외국계기업에 대한 差別的 適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과소자본규제제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고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過少資本規制制度의 규정이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소자본규제제도의 평가를 위하여 우선 기업은 자본과소화를 통하여 과연 어느 정도의 잠재적 조세회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特殊關係企業이 실질적인 자기자본제공을 借入金의 형태로 假裝하여 외국의 자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租稅回避效果는 일반적인 경우에 투자규모의 2% 이내, 그리고 투자수익의 10% 이내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이윤에 대한 법인세 부담에 대하여도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되므로 차입금의 형태로 자본을 제공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자기자본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세부담의 차이가 거의 없다.

OECD모델조약은 국제조세분야에서 중요한 규범의 역할을 수행한다. OECD모델조약 제9조(계열기업) 제1항에서는 「계열기업(혹은 특수관계기업)간의 상업상 혹은 금융상의 거래에서 獨立的인 企業間에 인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었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다 라면 일방국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국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利潤에 가산하여 課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과소자본규제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독립기업간원칙의 범위 내에서 과소자본규제제도가 운영되어져

야 한다는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모델조약 제24조(무차별조항 : Non Discrimination Clause) 제1항에서는 일방 계약국의 국민은 타방 계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여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독립기업간원칙형제도라도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는 OECD모델조약의 정신에 어긋남을 밝히고 있다.

過少資本規制制度 導入의 효과를 측정해 보기 위하여 국내기업의 관계회사간 부채비율에 관한 자료를 일부 회계법인의 감사자료와 상장기업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관계·관련회사 부채와 관계·관련회사 지분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5년 4월 1일 현재 30대 大規模 企業集團의 系列社間 전체 채무보증 금액은 82조 1천억원으로 이는 전년의 110조 7천억원에 비해 28조 6천억원이 감소한 것이며 자기자본 대비 채무 보증비율도 전년의 258.1%에서 161.9%로 감소하였다.

外國人投資企業의 평균 부채/자본비율은 國內企業 전체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1991년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자본비율은 653%로 국내기업(310%)의 2배를 능가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海外關係會社와의 채무거래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나 외국인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신용보증 제한, 부동산 등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현지금융에 애로가 있으며,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해외차입 규제로 인하여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한 借入金 규모는 작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의 추정과 OECD모델조약 그리고 외국의 과소자본규제제도 등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과소자본규제제도에 대한 評價 및 改善方案이 도출되었다. 가장 근본적인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을 동등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개편으로 국내법

(법인세법)적인 접근방법과 국제적인 접근방법의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 먼저 타인자본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폐지하는 것은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작용하여 오히려 재무구조를 惡化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두번째의 국내법적인 접근방법인 배당에 대하여도 지급이자와 마찬가지로 손금산입을 허용해주는 방안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배당에 대한 損金算入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무리한 배당을 실시하므로 재무구조가 오히려 더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국제법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는 위의 두 가지 방법과는 달리 기업의 급격한 세부담증가나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의 위험이 없는 방안이 될 것이다.

過少資本規制制度의 도입으로 인하여 야기될 여러 가지 단기적 經濟的影響 가운데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과소자본규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상의 과소자본규제제도가 가지는 고정비율형제도적 요소는 외국인투자에 큰 제약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상의 과소자본규제제도보다 우리나라 정부가 기업의 財務構造改善을 위하여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過多借入에 대한 損金不算入制度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국내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과다차입금의 損金不算入制度의 국내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기업도 관계회사로부터의 부채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表 VI-8> 참조). 그러나 국내 기업이 關係會社間保證을 통한 차입금 이용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하여 훨씬 용이하므로 보증채무를 포함한 차입금 규모는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하여 훨씬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借入金에 대한 손금불산입 판정기준을 3배율로 정하여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모두에게 적용하는 경우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국내활동에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다.

OECD모델조약에 비추어 볼 때 固定比率型形態를 취하는 과소자본규제제도는 OECD모델조약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獨立企業間原則型制度를 시행할 때는 그 적용을 외국기업에 제한시키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OECD 국가들이 OECD모델조약의 내용과 원칙적으로 합치되지 않는 내용의 과소자본규제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일본·독일 등은 법규정상 규제대상을 외국계기업만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주로 외국계기업이 규제대상이 되도록 입법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OECD가입을 목적에 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소자본규제제도가 OECD모델조약 無差別原則에 위배되지 않도록 미국처럼 조세가 감면되는 이자만을 과소자본규제제도의 규제대상으로 하는 등의 입법기술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고정비율형 과소자본규제제도에서 關係會社의 借入金과 출자지분자본의 최소비율이 3배인 것은 국제간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이므로 우리나라의 과소자본규제제도가 이를 택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이 정도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金融業種에 대하여 허용한 6배수 비율도 업종의 특수성에 비추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의 過少資本規制制度는 그러나 이렇게 3배수 비율(예외적으로 금융업에 대하여는 6배수 비율) 규정을 정하여 놓고도 다른 조항에서 업종별로 差等化된 배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서 제도가 어떤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차등화된 배수율을 적용한다면 제도의 유효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3배수(예외적으로 금융업에 대하여는 6배수 비율) 비율을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배수 비율을 넘어서는 차입금규모를 가지는 외국계기업이라도 그 조건이 독립기업간 기업의 차입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용을 면제하

는 Safe Harbor조항이 우리나라의 과소자본규제제도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3배수 비율을 모든 업종의 외국계기업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過少資本規制制度의 적용을 배제하는 Safe Harbor 조항의 조건 기준으로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당해 내국법인과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고 정하여 규제대상법인과 비교가능법인의 비교척도를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비교가능한 법인의 출자금액에 대한 借入金의 배수를 비교척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14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국내사업장의 國外支配株主가 본점을 뜻하는지 본점의 지배주주를 뜻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취지로 보아 본점과 본점의 지배주주 모두가 이에 해당되는 것은 자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법규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裕燦·安鍾錫,『過少資本規制制度의 導入方案』,未發刊資料,韓國租稅研究院,1995. 8.
- 三逸會計法人,『租稅法典』,1995.
- 孫元翼,「企業의 財務構造와 稅制」,未發刊 資料,韓國租稅研究院,1996. 3.
- 崔 洸·河泰亨,「韓國企業財務構造 決定要因에 관한 理解 및 實證的 考察」,『韓國開發研究』,1984 여름호, pp. 187~205.
- Andrew, M. C. S., “Thin Capitalization Rules to Be Enacted,” *Asia-Pacific Tax Bulletin*, Vol. 1, No. 8, 1995.
- Bati, A., “Taxation of Dividends and Interest: Japan,” *Bulletin for International Fiscal Documentation*, Vol. 47, No. 4, 1993, pp. 202~210.
- Brannan, G., “Tax Developments in the United Kingdom of Interest to U.S. Tax Advisers,” *Bulletin for International Fiscal Documentation*, Vol. 47, No. 7~8, 1993, pp. 363~366.
- Dehnen, P. H. and Rhines, R. A., “Thin Capitalization in German Tax Law,” *Bulletin for International Fiscal Documentation*, Vol. 46, No. 8, 1992, pp. 393~397.
- Hall, R. E. and D. W. Jorgenson,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No. 3, 1967, pp. 391~414.
- Harris, M. and R. Arthur, “The Theory of Capital Structure,” *The Journal of Finance*, Vol. XLVI, No. 1, 1991, pp. 297~355.
- Jorgenson, D. W.,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

-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No. 2, 1963, pp. 366~378.
- King, M. and D. Fullerton,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Klaus, S., Y. C. Adrian, and H. Lybrand, "Germany: New Thin Capitalization Rule," *Bulletin for International Fiscal Documentation*, Vol. 47, No. 10, 1993, pp. 594~598.
- Krever, R., "Australia: Thin Capitalisation Legislation," *Bulletin for International Fiscal Documentation*, Vol. 44, No. 1, 1990, pp. 21~25.
- Lawrence, B., "Government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Corporate Finance (Thin Capitalization): Australia," *Bulletin for International Fiscal Documentation*, Vol. 44, No. 3, 1990, pp. 118~129.
- Lawrence, B. and N. Wilson, "Government Restrictions on Debt Funding; Debt Creation Involving Non-residents: Australia," *Bulletin for International Fiscal Documentation*, Vol. 44, No. 3, 1990, pp. 130~132.
- Modigliani, F. and M. H. Miller, "The Cost of Capital Corporate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8, No. 3, 1958, pp. 261~297.
- Rigby, M., "A Critique of Double Tax Treaties as a Jurisdictional Coordination Mechanism," *Australian Tax Forum*, Vol. 8, No. 3, 1991, pp. 301~427.
- Sieker, K. and A. Yeeles, "New Thin Capitalization Rule: Germany," *Bulletin for International Fiscal Documentation*, Vol. 47, No. 10, 1993, pp. 594~598.
- Williamson, S., "Thin Capitalization: A Critical Review," *Australian Tax Forum*, Vol. 8, No. 2, 1991, pp. 181~216.

附 錄

〈법인세법〉

제 16 조

⑪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가.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료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 18 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2. 임야, 농경지, 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제 26 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2 조(결정과 변경)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 조(자기자본의 계산)

①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법 제22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기자본은 수익사업부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 2 조

① 제11항

“國外支配株主”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 출자자 또는 본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 14 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割引料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제 15조(제3자 개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2.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제 1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제14조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제18조의 3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

제 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해당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주주(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국외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자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 가. 일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것
 -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 다.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 라. 일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타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 마.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 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 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제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제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 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3 조(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①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을 법 제

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 한다.

제 24 조(차입금의 범위)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제 25 조(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14조 제1항의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손금불산입액} = (A) \times \frac{(B) - (C)}{(B)}$$

A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 및 할인료

B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C :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의 3배 또는 업종별배수

②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 및 할인료”라 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금융리스에 포함된 지급이자 등 경제적 실질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자금 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지분”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 당해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 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소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하 “직렬출자관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⑤ 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및 기타 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 25조(업종별 배수)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금융업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6배를 적용한다.

제 26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지

나 제26조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가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조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손금불산입액} = (A) \times \frac{(B)-(C)}{(B)}$$

A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B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C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의 × 비교대상배수

제 28 조 (원천징수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제26조 제1항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